



파 주 시 의 회
제266회 정례회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6.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I. 예산 개요	1
1. 제안 경위	1
2. 편성 배경	1
3. 예산 규모	2
4. 총괄 검토	4
II. 일반회계 예산안	5
1. 일반회계 총괄	5
2. 일반회계 세입	6
3. 일반회계 세출	11
【검토의견 - 일반회계】	
(II-1)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계상	27
(II-2)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수납 과목의 보완 미이행	28
(II-3) 지방세 추계 무변동	30
(II-4) 보통교부세 당초산정액 감소와 세입예산 계상 추이	31
(II-5) 보조금 반납금의 세입·세출 불일치	34
(II-6) 세출 증액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36
(II-7) 법정 사전절차 미완료 상태의 예산 계상	39
(II-8) 성립전예산 편성 규모와 사후 의결	44
(II-9) 전년도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증액 편성	46

(Ⅱ-10) 계속비 사업조서 미편제 상태의 연부액 변경 반복	48
(Ⅱ-11) 계속비 연한 초과에 대한 의회 의결 여부	52
(Ⅱ-12) 경기도 내시 부족분의 추가 편성	55
(Ⅱ-13) ‘예정된 공정’에 따른 증액의 회차별 반복	60
(Ⅱ-14) 연간 소요에 미달하는 본예산 편성	62

Ⅲ. 특별회계 예산안 64

1. 특별회계 총괄	64
2. 기타특별회계	65
3. 공기업특별회계	68

【검토의견 - 특별회계】

(Ⅲ-1)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반환금 계상	72
(Ⅲ-2)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실적의 예산 미반영	75
(Ⅲ-3) 하수도사업 전년도 집행부진 사업 증액	77
(Ⅲ-4) 위·수탁 설계용역의 사업비 반납과 부족분 동시 발생	79
(Ⅲ-5) 하수도사업 계속비 의결 근거와 조서 편제 불일치	81

Ⅳ. 예산총칙안 85

1. 제1조 -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	85
2. 제3조 - 예비비	86
3. 제4조 - 지방채 발행 한도액	87
4. 제5조 - 예산의 이용	87

Ⅴ. 참고자료 88

1. 회차별 예산 규모 추이	88
2. 상임위원회별 증감 현황	89
3. 예산·결산 심사 지적·주문사항과 제3회 추경 반영 대조 ..	9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I. 개요 92

- 1. 제안 경위 92

II. 주요 내용 93

- 1. 기금 총괄 93

- 2. 남북교류협력기금 94

【검토의견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경기도에 대한 지출의 근거 97

- (2) 지원 절차의 이행 여부 99

- (3) 분담액 산정근거와 파주시의 역할 100

< 작성 기준 >

- 이 검토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대상으로 함.
- 검토 자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별도로 작성·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자료로 보완함.
- 금액은 표에서 숫자로, 서술에서 억·만원으로 표기하고 표의 단위는 각 표에 병기함.
 - 단위와 절사는 의안의 규모에 따라 달리함. 추가경정예산안은 표·서술 모두 백만원 미만을 절사(표는 백만원 단위)하되, 1억원 미만 금액의 서술은 만원 미만을 절사하며, 기재 금액이 대부분 1억원 미만인 표는 천원 단위로 함. 기금계획변경안은 표를 천원 단위로 하고 서술은 만원 미만을 절사함.
 - 절사에 따라 합계·차감 시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음수는 △로 표기함. 모든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절사하여 표기하되 구성비는 반올림함(계 100.0%). 별도 표기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령 인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함.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I. 예산 개요

1. 제안 경위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2026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이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와 구분되므로 별책으로 편성되어 별개의 안건으로 회부된 것임.

2. 편성 배경

- 제출된 사업별 설명자료 및 세부 산출내역을 종합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파악됨.
 -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영
 -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 확정 내시액 반영
 -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 및 하반기 국·도비 추가 내시 반영
 - 계속·현안사업의 공정 진척에 따른 부족분 보완

3. 예산 규모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084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7억 5,900만원(5.4%)이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1,293억 2,600만원(6.2%) 증액되어 전체 증가액의 95.2%를 차지함.
- 특별회계는 64억 3,200만원(1.6%) 증액에 그치며, 그중 기타특별회계는 12억 1,500만원(1.5%)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2억 1,700만원(1.6%) 증가하였음.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예산(A)	구성비	제3회 추경(안)(B)	구성비	증감(B-A)	증감률
합 계	2,472,728	100.0	2,608,487	100.0	135,759	5.4
일반회계	2,072,863	83.8	2,202,190	84.4	129,326	6.2
특별회계	399,865	16.2	406,297	15.6	6,432	1.6
기타특별회계	80,564	3.3	81,779	3.1	1,215	1.5
공기업특별회계	319,301	12.9	324,518	12.4	5,217	1.6

- 회차별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본예산에서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2,485억 2,700만원(10.5%)이 누적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 누적 증액률은 일반회계 12.2%, 기타특별회계 2.2%, 공기업특별회계 2.2%로 증액이 일반회계에 집중되어 있음. 제1·2회 추가경정예산은 각각 2.5%·2.1% 규모였으나 제3회 추경은 5.4%로 연중 최대 규모임.

[2026년도 회차별 편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A)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안)	누적 증감(B)	제3회 추경 후	본예산 대비(B/A)
합 계	2,359,960	60,246	52,521	135,759	248,527	2,608,487	10.5
일반회계	1,962,648	57,693	52,521	129,326	239,542	2,202,190	12.2
특별회계	397,312	2,552	-	6,432	8,984	406,297	2.2
기타특별회계	80,012	551	-	1,215	1,766	81,779	2.2
공기업특별회계	317,300	2,001	-	5,217	7,218	324,518	2.2

-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25. 8월 제출)까지 본예산(2조 1,527억 5,400만원) 대비 20.8%인 4,487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던 반면, 2026회계연도는 같은 시점에 10.5% 수준으로 증액 폭이 절반가량 축소되었음.
- 다만 2025회계연도는 제3회 추경에서만 2,965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연중 최대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회차별 편성 규모의 편중이 완화되었는지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총괄 검토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로 올해 세 차례 추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나, 그 재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상급기관이 확정 내시한 이전재원이 대부분임.
- 일반회계 세입 증액의 97.5%가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자체수입 증액은 2.4%에 그치는바, 새로 확충된 세입 기반 위에서 사업을 넓히는 편성이라기보다 회계연도 마감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성격의 편성으로 보임.
- 그러한 성격을 감안하면, 결산으로 확정된 수치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상당 부분 계상하여 세입 계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주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두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익이 본예산 계상액 그대로 유지되어 전년도 결산 실적과 크게 어긋나 있음.
- 다음으로는 편성 규모보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관건으로 판단됨. 세출 증액의 3분의 1 이상이 회계연도 후반에 시설비로 배분되었고 이번 회차에 처음 계상된 시설사업도 적지 아니한바, 전년도 집행이 부진하였던 사업에 다시 증액이 이루어진 사례도 확인되므로 각 사업의 선행절차 이행 상황과 집행계획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성립전예산의 사후 의결, 계속비 사업조서의 미편제와 같이 의회의 의결과 통제가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회차를 거듭하여 나타나고 있는바, 개별 사업의 당부와는 별도로 편성 절차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하 세부 사항은 각 장의 검토의견에서 다루었으며, 우리 위원회가 최근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서 제기한 지적·주문사항의 반영 상황은 「Ⅴ. 참고자료」 3에서 대조하였음.

Ⅱ. 일반회계 예산안

1. 일반회계 총괄

-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조 2,02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3억 2,600만원(6.2%) 증가하였으며 이번 회차 전체회계 증액의 95.2%를 차지함. 본예산 대비로는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12.2%가 누적 증액된 것임.

[세입·세출 증액 상위 항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증액계	구성비 계
	사업명	증액 (구성비)	사업명	증액 (구성비)	사업명	증액 (구성비)		
세입 (장)	보전수입등및내부 거래	61,774 (47.8)	보조금	36,979 (28.6)	지방교부세등	24,910 (19.3)	123,663	95.6
세출 (편성목)	시설비및부대비	48,012 (37.1)	일반보전금	21,038 (16.3)	자치단체등이전	18,708 (14.5)	87,758	67.8

- 세입은 증액의 97.5%가 이전수입(49.8%)과 보전수입등(47.8%)으로 채워졌고, 자체수입 증액은 2.4%에 그친바, 증액 재원 대부분은 전년도 결산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상급기관이 확정 내시한 이전재원임.
- 세출은 시설비및부대비와 이전성 경비(일반보전금, 자치단체등이전 등)가 증액의 67.8%,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분인 반환금기타가 11.1%임.
- 종합하면 이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회계연도 마감 결과(순세계잉여금·보조금 정산)와 국·도비 내시 확정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데 중심이 있고, 새로 확충된 세입 기반 위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편성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일반회계 세입

○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본예산 편성 시의 추계 4,321억 9,2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검토의견 II-3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반영되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17억 7,400만원(33.8%)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체 증가액의 47.8%로 가장 큰 비중임.
-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조정 및 추가 내시에 따라 보조금이 369억 7,800만원(4.0%)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 반영으로 지방교부세등이 249억 1,000만원(8.1%) 증액되었음. 이 외에도 조정교부금등 25억원, 세외수입 31억 6,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재원 및 세입 장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장(章)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증감률	증감액 구성비
계	2,072,863	2,202,190	129,326	6.2	100.0
자체수입					
100 지방세수입	432,192	432,192	-	-	-
200 세외수입	79,500	82,664	3,163	3.9	2.4
이전수입					
300 지방교부세등	304,352	329,262	24,910	8.1	19.3
400 조정교부금등	160,000	162,500	2,500	1.5	1.9
500 보조금	914,324	951,303	36,979	4.0	28.6
보전수입등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2,493	244,267	61,774	33.8	47.8

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00) 과목은 617억 7,4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
- 잉여금(711) 496억 1,400만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계상액임(검토의견 II-1 참조).
 - 전년도이월금(712) 121억 5,900만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6억 1,4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5억 4,500만원으로 구성된 반납 대상 보조금 사용잔액이며, 기정예산 없이 이번 회차에 신규 계상된 것임(검토의견 II-5 참조).
 - 전입금(721)은 증감이 없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과목별 증감]

(단위 : 백만원)

과목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2,493	244,267	61,774
711 잉여금	179,897	229,511	49,614
712 전년도이월금	-	12,159	12,159
721 전입금	2,596	2,596	-

나. 보조금

○ 보조금(500) 과목은 369억 7,800만원 증가하였는데

- 국고보조금등(511)이 265억 7,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229억 2,200만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3,700만원 · 기금 11억 1,100만원으로 구성됨.
- 시 · 도비보조금등(521)은 104억 700만원 증액되었음.

[보조금 과목별 증감]

(단위 : 백만원)

과목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500 보조금	914,324	951,303	36,979
511 국고보조금등	723,898	750,469	26,571
511-01 국고보조금	619,889	642,811	22,922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5,394	57,931	2,537
511-03 기금	48,614	49,726	1,111
521 시 · 도비보조금등	190,426	200,833	10,407

다. 지방교부세등

- 지방교부세등(300)은 기정예산 대비 249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 보통교부세는 본예산에 3,000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제1회 추경에서 확정 내시액 반영으로 159억원이 감액된 후, 제2회 추경 52억 5,200만원·제3회 추경 156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3,04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로는 49억 5,200만원 증액되었음(검토의견 II-4 참조).
 - 특별교부세 37억 1,000만원은 전액 신규 계상이며, 이 중 6건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임(검토의견 II-8 참조).
 - 부동산교부세는 56억원 증액되었음.

[지방교부세등 회차별 계상 추이]

(단위 : 백만원)

과목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안)	본예산 대비
300 지방교부세등	315,000	299,100	304,352	329,262	14,262
311-01 보통교부세	300,000	284,100	289,352	304,952	4,952
311-02 특별교부세	-	-	-	3,710	3,710
311-03 부동산교부세	15,000	15,000	15,000	20,600	5,600

주1) 300 지방교부세등은 하위 과목이 관 310·항 311 각 하나씩이어서 장·관·항의 계가 모두 같으므로, 교부세 종류가 구분되는 목(目) 단위로 표기함.

주2)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장(章)의 정식 명칭은 ‘지방교부세 등’ 이나, 형제 과목인 ‘조정교부금등’·‘국고보조금등’과 표기를 맞추어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교부세등’으로 붙여 씀.

라. 조정교부금등

○ 조정교부금등(400)은 25억원 증액된바

- 시·군조정교부금(421-01) 1,600억원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아니하였음.
- 제3회 추경 증액 25억원은 시·군기타재원조정수입(421-03)의 신규 계상분임.

[조정교부금등 회차별 계상 추이]

(단위 : 백만원)

과목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안)	본예산 대비
400 조정교부금등	160,000	160,000	160,000	162,500	2,500
421-01 시·군조정교부금	160,000	160,000	160,000	160,000	-
421-03 시·군기타재원조정수입	-	-	-	2,500	2,500

주) 400 조정교부금등은 하위 과목이 관 420·항 421 각 하나씩이어서 장·관·항의 계가 모두 같으므로, 목(目) 단위로 표기함.

마.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3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외수입(224-07)이 29억 1,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211-02) 2억원, 기타이자수입(216-03) 4,795만원임.

3. 일반회계 세출

가. 세출 총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2,02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3억 2,600만원(6.2%) 증가하였으며, 증감이 발생한 세부사업은 422건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부사업 2,414건의 17.4%임.

나. 분야별 증감

- 교통 및 물류 분야가 전체 증가액의 2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복지 23.1%, 일반공공행정 10.2%, 국토 및 지역개발 10.1%가 뒤를 이음.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로는 교통 및 물류 20.0%, 국토 및 지역개발 17.5%가 높으며, 교육 분야는 증감이 없음.

[분야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야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증감률	증감액 구성비
계	2,072,863	2,202,190	129,326	6.2	100.0
교통 및 물류	179,429	215,370	35,940	20.0	27.8
사회복지	988,663	1,018,568	29,904	3.0	23.1
일반공공행정	132,617	145,772	13,155	9.9	10.2
국토 및 지역개발	74,432	87,482	13,049	17.5	10.1
문화 및 관광	98,797	106,155	7,358	7.4	5.7
환경	137,236	144,164	6,928	5.0	5.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3,861	90,564	6,703	7.9	5.2
농림해양수산	81,228	86,380	5,152	6.3	4.0
기타	178,723	183,516	4,792	2.6	3.7
공공질서 및 안전	27,973	31,383	3,409	12.1	2.6
보건	43,696	46,628	2,931	6.7	2.3
교육	36,202	36,202	-	-	-
예비비	10,000	10,000	-	-	-

다. 실·국별 증감

- 도로교통국, 복지정책국, 도시발전국 3곳이 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하며, 감액이 발생한 기관은 문산도서관 1개뿐임.

[실·국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국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증감률	증감액 구성비
계	2,072,863	2,202,190	129,326	6.2	100.0
도로교통국	140,459	171,065	30,605	21.7	23.7
복지정책국	941,214	959,441	18,227	1.9	14.1
도시발전국	54,155	70,267	16,111	29.7	12.5
도시관리사업본부	103,554	116,256	12,702	12.2	9.8
민생경제국	94,561	104,287	9,726	10.2	7.5
건축주택국	45,496	54,927	9,431	20.7	7.3
문화교육국	121,230	128,620	7,390	6.0	5.7
환경국	137,364	144,296	6,931	5.0	5.4
농업기술센터	76,661	81,745	5,083	6.6	3.9
예산재정실	158,670	163,693	5,022	3.1	3.9
행정안전국	101,946	105,530	3,584	3.5	2.8
파주보건소	27,544	29,183	1,638	5.9	1.3
운정보건소	16,491	17,744	1,252	7.5	1.0
AI정책관	8,526	9,387	861	10.0	0.7
미래전략관	804	1,132	328	40.7	0.2
읍·면·동	22,630	22,954	323	1.4	0.2
중앙도서관	5,643	5,799	155	2.7	0.1
의회사무국	2,434	2,471	36	1.5	0.0
교하도서관	6,149	6,181	31	0.5	0.0
차량등록사업소	528	553	24	4.6	0.0
감사관	365	377	12	3.2	0.0
소통홍보관	3,688	3,698	10	0.2	0.0
문산도서관	2,739	2,573	△166	△6.0	△0.1

라. 성질별(편성목) 증감

- 시설비및부대비가 세출 증액의 37.1%를 차지하며 93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었음. 이 중 2026회계연도 신규사업이 42건 141억 5,200만원(29.4%)이고,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331억 2,200만원(68.9%)임(검토의견 II-6 참조).
- 일반보전금, 자치단체등이전이 뒤를 이으며, 반환금기타는 1,631건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입 전년도이월금(712)과 대응되는 항목임(검토의견 II-5 참조).
- 감액이 발생한 편성목은 기타회계등전출금 1개뿐이며, 이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른 것임(검토의견 III-1 참조).

[성질별(편성목)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편성목	증 감	구성비	편성목	증 감	구성비
시설비및부대비	48,012	37.1	자산취득비	2,298	1.8
일반보전금	21,038	16.3	민간자본이전	2,220	1.7
자치단체등이전	18,708	14.5	전출금	2,020	1.6
반환금기타	14,377	11.1	일반운영비	1,367	1.1
민간이전	6,974	5.4	기금전출금	1,251	1.0
인건비	5,340	4.1	연구개발비	776	0.6
재료비	2,447	1.9	그 밖의 편성목	469	0.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382	1.8	기타회계등전출금	△360	△0.3

주) ‘그 밖의 편성목’은 여비·출연금·포상금·배상금등·의회비·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주및재해보상금·직무수행 경비·연금부담금등의 합계임.

마. 주요 증감 사업

- 증액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28건 923억 3,900만원으로 순증액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출 증액의 71.4%를 차지하며, 감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없음.

[증액 10억원 이상 사업(28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 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The 경기패스(국비)	버스정책과	10,356	25,500	15,144	보조
주거급여	주택과	42,265	51,082	8,816	보조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후위기대응과	6,104	12,418	6,314	보조
지역화폐 발행지원(자체)	민생경제과	6,736	11,987	5,250	자체
인력운영비(총괄)	회계과	117,731	122,658	4,927	자체
보전지출	보육아동과	200	4,071	3,870	자체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공건축과	8,455	12,218	3,763	자체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공건축과	8,565	12,021	3,456	자체
(가칭)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보육아동과	13,528	16,878	3,350	자체
사업용차량(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버스정책과	14,500	17,502	3,002	자체
도시재생사업(평화로드 문산)	균형개발과	-	2,970	2,970	보조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공건축과	8,455	11,370	2,915	자체
보전지출	민생경제과	-	2,632	2,632	자체
도로 설해대책 운영	도로관리과	8,865	11,365	2,500	자체
저상버스 도입보조	버스정책과	1,653	4,132	2,479	보조
소하천정비(윗배우니천)(전환사업)	하천관리과	-	2,250	2,250	자체
소하천정비(찬우물밀천)(전환사업)	하천관리과	-	2,152	2,152	자체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전환사업)	체육과	-	2,100	2,100	자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교통정책과	6,447	8,431	1,984	보조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자체)	도로건설과	-	1,900	1,900	자체
보전지출	노인장애인과	18	1,777	1,758	자체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조리 파크골프장)(전환사업)	체육과	690	2,190	1,500	자체
출생 축하 지원	여성가족과	2,884	4,378	1,494	자체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	평화경제과	-	1,300	1,300	보조
내부거래지출	안전총괄과	4,178	5,430	1,251	자체
백석2리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안전총괄과	-	1,200	1,200	보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민생경제과	26,928	27,960	1,032	보조
문산보건센터 운영	문산보건센터	102	1,132	1,030	자체

주) ‘재원’은 사업별 설명자료의 재원부담비율 기준으로, 국·도비·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사업은 ‘보조’, 전액 시비 사업은 ‘자체’로 표기함(이하 같음).

○ 분야별로 1억원 이상 증감이 발생한 사업은 134건(증액 125건 · 감액 9건)임.

[일반공공행정(01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10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공건축과	8,455	12,218	3,763	자체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총사업비의 연차별 예산계획에 따른 편성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공건축과	8,565	12,021	3,456	자체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총사업비의 연차별 예산계획에 따른 편성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공건축과	8,455	11,370	2,915	자체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총사업비의 연차별 예산계획에 따른 편성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공건축과	11,401	11,926	525	자체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총사업비의 연차별 예산계획에 따른 편성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AI정책관	-	500	500	보조
도비 보조금으로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추가 구축을 위한 500,000천원 증액					
보전지출	하천관리과	-	457	457	자체
2025회계연도 국 ·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민방위 마을경보 교체 · 개선	AI정책관	-	400	400	보조
도비 보조금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및 노후 마을방송장비 교체 개선 예산 400,000천원 증액					
2025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	미래전략관	-	385	385	보조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활용 기준에 따른 기여자 포상 및 목적사업비 신규편성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예산법무과	569	694	125	자체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소송 항소심 대응을 위한 사업비 검증 용역비 추가 편성					
영농환경개선(주민참여)	운정4동	150	20	△129	자체
당초 계획 대비 수요 저조 및 일부 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불가에 따른 홍보게시판 제작 설치비 감액					

주) ‘증감사유’는 사업별 설명자료의 증감사유를 요약한 것으로, 금액 · 비율 등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음(이하 같음).

[공공질서 및 안전(02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8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내부거래지출	안전총괄과	4,178	5,430	1,251	자체
문발2교 용벽 등 긴급보수로 전입금 84.45% 소진, 하반기 재난 대응분 추가 전출					
백석2리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안전총괄과	-	1,200	1,200	보조
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 23억원 중 1차 발주분 12억원 편성(특별교부세 5억 · 시비 7억)					
보전지출	안전총괄과	-	216	216	자체
2025회계연도 국 ·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안전총괄과	-	190	190	보조
우리동네 풍수해 사업(사각지대 재해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지원	안전총괄과	-	140	140	보조
「2026년 비상대피시설 평시활용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2026년 폭염대책비	안전총괄과	-	108	108	보조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폭염저감시설 설치, 폭염예방물품 구매, 무더위쉼터 정비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	안전총괄과	-	104	104	보조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계층(노인 · 장애인 · 야외근로자 등) 보호를 위한 물품 지원					
2026년 7월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안전총괄과	-	100	100	보조
7월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에 복구계획 수립 전 응급복구비 투입					

[문화 및 관광(06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13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전환사업)	체육과	-	2,100	2,100	자체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선금 반환금 이자 세입 조치로 증액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조리 파크골프장) (전환사업)	체육과	690	2,190	1,500	자체
조리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및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비 및 감리비 편성					
적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체육과	-	725	725	보조
공공건축물 기획용역 및 현상설계 공모에 따른 설계비 편성					
시민화합 체육대회	체육과	290	914	624	자체
2026년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예산 290,000천원 중 275,500천원을 시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체육과	3,350	3,850	500	보조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배분에 따른 공사비 편성					
보전지출	체육과	-	368	368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보전지출	문화예술과	-	312	312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공공체육시설 개선	체육과	245	495	250	자체
노후 공공체육시설의 정비 및 부대시설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안전확보와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물 정비 예산편성					
공공체육시설 운영	체육과	4,612	4,859	247	자체
K2리그 승격에 따른 홈경기 확대와 신규 체육시설 확충으로 공공운영비 수요 증가					
제3땅굴 실내공기질 개선	관광과	-	240	240	자체
제3땅굴 급·배기 장비 교체 신규 도입 등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예산 신규 확보					
도라전망대 진출입로 안전확보	관광과	-	220	220	자체
진출입로 실시설계 용역 및 아스팔트 재포장·데크 옹벽 설치 등 예산 신규 편성					
파주문화재단 운영	문화예술과	5,374	5,488	113	자체
2026년 인건비(호봉표 및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82,073천원 증액					
도서관 시설관리	문산도서관	1,631	1,461	△170	자체
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액(290,040천원 → 119,843천원)					

[환경(07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2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후위기대응과	6,104	12,418	6,314	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 12,418,571천원 반영(경기도수질관리과-487호)					
쓰레기종량제 관리	자원순환과	1,341	1,772	430	자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종량제봉투 조달단가가 규격별 최대 38% 인상, 불연성 마대 단가도 11% 상승					

[사회복지(08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27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주거급여	주택과	42,265	51,082	8,816	보조
국토교통부에서 전년도 말 수급가구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당해 연도 지급 추이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으로 조정					
보전지출	보육아동과	200	4,071	3,870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가칭)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보육아동과	13,528	16,878	3,350	자체
건축 공정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편성(철골공사, 골조공사)					
보전지출	민생경제과	-	2,632	2,632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보전지출	노인장애인과	18	1,777	1,758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출생 축하 지원	여성가족과	2,884	4,378	1,494	자체
출생 축하금 지원액 부족분 추가 반영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장애인과	-	811	811	자체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26.8. 준공에 따른 개관 준비를 위한 인건비 등 편성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노인장애인과	31,359	32,169	810	보조
경기도 확정 내시 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존 970명 → 변경 995명)로 증액 편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노인장애인과	5,888	6,559	671	보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증액 (지원대상) 221명 → 234명					
보전지출	복지지원과	-	601	601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사회복지(08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27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노인장애인과	18,451	18,978	527	보조
경기도 확정 내시 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존 1,081명 → 변경 1,112명) 증액 편성					
노인생활안정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노인장애인과	538	1,053	514	보조
경기도 내시 조정에 따라 12개월 사업기간 중 9개월분만 반영되어 3개월분 추가 증액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청년청소년과	1,455	1,955	499	보조
도비 변경 내시 증액으로 인해 변경된 신청률(49.7% → 66.8%) 반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6종))(자체)	노인장애인과	-	418	418	자체
도비 9개월분만 반영되어 특수근무수당·종사자 인건비 부족분(3개월) 시비 추가 편성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노인장애인과	1,893	2,266	372	보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증액 (지원대상) 245명 → 266명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청소년과	3,388	3,723	334	자체
도 추경 전, 3분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비 매칭분(334,800천원) 증액					
보전지출	복지정책과	-	326	326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내부거래지출	복지지원과	6,192	6,512	320	자체
연초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13,498명 → 14,332명)에 따른 의료급여 사업비용 증가(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보전지출	여성가족과	-	293	293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성매매집결지 정비	여성가족과	330	532	202	자체
성매매집결지 해체 관련 지역사회 분열 및 공공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론화 추진 비용 추가 계상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민생경제과	-	147	147	보조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자체)	노인장애인과	-	134	134	자체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감액으로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3개월분) 시비 자체 예산 추가 편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자체)	노인장애인과	-	133	133	자체
도비 9개월분만 편성되어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3개월) 시비 추가 편성					
보전지출	청년청소년과	85	215	130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사회복지(08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27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아이돌봄 지원	여성가족과	7,044	7,144	100	보조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사업량 증가(109명 → 192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청년)	복지지원과	2,466	2,342	△124	보조
2026년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경기도 변경 내시 반영(경기도 청년기회과-7213, 2026. 6. 25.)					
가족돌봄수당 지원	보육아동과	1,155	648	△507	보조
사업 참여 시·군 증가에 따라 시·군별 사업량 재배정(321명 → 180명)					

[보건(09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6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문산보건센터 운영	문산보건센터	102	1,132	1,030	자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운송, 입주청소, 홍보물 제작비용 편성(62,510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운정보건소	2,322	3,153	831	보조
1인당 평균 지원액(1,250,000원 → 1,310,000원) 및 사업량(1,858명 → 2,407명)이 증가하여 831,265천원 증액 편성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운정보건소	700	964	264	자체
1인당 평균 지원액(500,000원→637,000원) 및 사업량(1,400명→1,512명) 증가하여 264,000천원 증액 편성함					
보건지출	질병관리과	-	168	168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건강증진과	399	523	124	보조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624명 → 818명)에 따른 124,162천원 증액 편성					
보건지출	건강증진과	-	104	104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농림해양수산(10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11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시농업과	2,482	3,400	918	보조
올해 초·중·고 6개 학교(급식인원 1,706명)가 개교하여 급식 인원 증가 및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급식 소요 예산 증가분 반영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도시농업과	1,163	1,813	650	자체
설계변경 및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사업비 650,000천원 증액					
보전지출	농업정책과	76	724	648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설비)	동물관리과	104	716	612	보조
국내 구제역 발생빈도에 따른 농가 백신접종 수요 증가로 인한 자체시비 편성 (구제역 예방백신)					
보전지출	동물관리과	-	555	555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농업정책과	168	567	399	보조
농지 전수조사로 조사대상 필지 증가(10,346 → 86,427) 및 기간제근로자 증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농업정책과	-	270	270	보조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6,763톤)					
파주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도시농업과	379	579	200	자체
파주로컬푸드직매장 복합센터점 개장에 따른 관리위탁비 200,000천원 증액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농업정책과	-	140	140	보조
중동 상황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 (파주장단콩축제)(전환사업)	도시농업과	-	100	100	보조
경기대표관광축제 공모 우수축제 선정으로 도비사업 확보(도비 50,000 시비 50,000) 및 편성에 대한 사업비 신규 편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동물관리과	704	570	△134	자체
럼피스킨 의무접종 → 자율접종 전환에 따른 시술비 감액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5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지역화폐 발행지원(자체)	민생경제과	6,736	11,987	5,250	자체
지역화폐 발행 수요 급증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발행 수요에 대한 상시 2%, 10%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시비 추가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민생경제과	26,928	27,960	1,032	보조
지역화폐 발행수요 급증에 따라 국·도비 사업 추가 지원 예산을 편성해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안정적으로 지원					
전선 지중화 구간 정비	에너지과	-	704	704	자체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6년 경기RE100 소득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예산 증액 편성					
2026년 경기RE100 선도사업	에너지과	-	261	261	보조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6년 경기RE100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산 증액 편성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에너지과	19,530	18,785	△744	보조
전환지원금 예산을 조정하여 수요가 많은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지원 물량 확대					

[교통 및 물류(12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34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The 경기패스(국비)	버스정책과	10,356	25,500	15,144	보조
경기도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사업용차량(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버스정책과	14,500	17,502	3,002	자체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보조금 지급단가(국토부 고시)가 상승하여 예산 증액 필요					
도로 설해대책 운영	도로관리과	8,865	11,365	2,500	자체
최소 비축량(12,000톤) 확보를 위한 제설제 추가 구입(현 보유량 7,186톤)					
저상버스 도입보조	버스정책과	1,653	4,132	2,479	보조
2026년 추가 수요조사로 저상버스 28대 증가(19대 →47대)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교통정책과	6,447	8,431	1,984	보조
경기도에서 9개월분만 내시 되어 본예산에는 해당 기간분만 편성, 잔여 3개월분은 도비 추가 내시 예정에 따라 추경에 반영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자체)	도로건설과	-	1,900	1,900	자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반납받은 1차 정산금 19억원을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비(전액시비)로 별도 예산 편성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매칭)	버스정책과	3,230	4,067	836	자체
경기도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교통 및 물류(12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34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캠프하우스 도로 개설)	도로건설과	-	800	800	자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토지 보상비 및 관급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비 증액					
운정 지하철도 필수안전시설 설치	도로관리과	-	700	700	보조
특별교부세 7억원 교부 결정에 따른 편성					
시내버스 [구도심-신도심(GTX운정중앙역) 연계 직행좌석 운송사업]	버스정책과	1,800	2,460	660	자체
경기도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편성(비용 조정에 따른 예산 재산정)					
시도41호선(갈현~범홍) 도로확포장	도로건설과	-	600	600	자체
시도41호선(갈현~범홍)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도4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 실시설계비 및 관련 영향평가비 반영					
철도망 구축 대응 전략 수립	교통정책과	-	500	500	자체
철도망 구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법원읍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건설과	-	500	500	보조
'26년 5월 상반기 특별교부세 500백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함					
금촌3동 송화로(복지센터 앞) 보행데크 설치	도로건설과	-	500	500	보조
'26년 5월 상반기 특별교부세 500백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버스정책과	-	434	434	자체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차고지 부족 해소 및 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필요로 분석					
보전지출	버스정책과	-	350	350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학령산고개)	도로관리과	-	330	330	보조
기후위기 대응전략 사업 추가 선정 및 도비 보조금 교부					
사업용차량(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버스정책과	-	324	324	자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버스가 지급대상에 추가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보광사고개)	도로관리과	-	300	300	보조
기후위기 대응전략 사업 추가 선정 및 도비 보조금 교부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	도로관리과	-	300	300	보조
기후위기 대응전략 사업(빗물받이 정비) 추가 선정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보도육교 노후 승강기 교체	도로관리과	300	600	300	자체
생애주기 경과·부품 단종으로 고장이 잦은 승강기 3대 교체					

[교통 및 물류(12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34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내부거래지출	교통정책과	2,011	2,294	282	자체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 증액(시·도비 보조금 등)에 따라 특별회계 전출금 증액					
도로포장 유지관리(운정·교하)	도로관리과	2,703	2,935	232	자체
아스콘 단가 인상으로 연간단가공사의 설계 물량 대비 확보량 부족					
보전지출	교통정책과	-	203	203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도로건설과	3,751	3,928	177	자체
아스콘 공급 지연 및 관급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택시 지원)(자체)	버스정책과	3	163	160	자체
'26년 본예산 대비 부족액(이용률 증가 등) 및 신규 3개 마을 확대에 따른 증액					
안전한 통학로 조성(연풍초)	도로건설과	-	160	160	보조
'26년 3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60백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함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지원사업	도로관리과	-	160	160	보조
2025년 지반탐사에서 제외된 출판단지 등 도심지 지반침하 사전 예방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자체 노선)	버스정책과	1,857	2,010	152	보조
경기도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편성(비용 조정에 따른 예산 재산정)					
법원읍 창고형 제설전진기지 신축('25년 특조)	도로관리과	600	735	135	보조
'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800백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교부 결과 600백만원만 반영됨					
사업용차량(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버스정책과	1,400	1,520	120	자체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 대비 보조금 지급률(국토부 고시) 상향으로 인한 예산 증액 필요					
도로포장 유지관리(서부권)	도로관리과	1,883	1,983	100	자체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아스콘 단가 인상으로 확보량 부족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운정·교하)	도로관리과	820	920	100	자체
동패로8번길 자전거도로 노후·파손에 따른 재포장 추가					
내부거래지출	주차관리과	1,634	671	△962	자체
주정차단속차량 교체 및 주행형 카메라 구입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					

[국토 및 지역개발(14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16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도시재생사업(평화로드 문산)	균형개발과	-	2,970	2,970	보조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생) 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소하천정비(윗배우니천)(전환사업)	하천관리과	-	2,250	2,250	자체
2025년 10월 1차분 사업착공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비 반영					
소하천정비(찬우물밀천)(전환사업)	하천관리과	-	2,152	2,152	자체
보상절차 이행을 위한 측량 등 각종 수수료 및 보상비(30%) 확보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	평화경제과	-	1,300	1,300	보조
2026년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국가하천 유지관리	하천관리과	-	750	750	보조
국고보조금 차수별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추경에 편성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성동 마을회관)	균형개발과	-	713	713	보조
그린리모델링 대상지 1개소 선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 반영(국·도비 가내시)					
소하천정비(윗불기천)(전환사업)	하천관리과	-	502	502	자체
보상절차 이행을 위한 측량 등 각종 수수료 및 보상비(30%) 확보					
보전지출	주택과	-	484	484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풍수해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하천관리과	480	960	480	보조
도비보조금 2차 추가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추경에 편성					
호우대비 소하천 준설사업	하천관리과	-	394	394	보조
호우대비 소하천 준설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추경에 편성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	기업지원과	1,150	1,320	170	자체
측량수수료 및 토지보상비 지급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지역)	도시관리과	1,418	1,548	130	자체
해솔공원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가(증 50,000천원)					
군소음 피해 보상금	도시계획과	-	114	114	보조
신규 소음대책지역 고시(멀은이 포병사격장)로 보상금 지급 인원·건수 증가					
보전지출	도시계획과	-	101	101	자체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소하천정비(큰말천)(전환사업)	하천관리과	-	100	100	자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에 따른 용역비 반영					

[국토 및 지역개발(14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16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운정호수·소리천 부잔교 재가설	도시관리과	700	586	△113	자체
낙찰차액 및 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정산 등 집행잔액을 금회 감액 편성하고자 함					

[기타(900) 분야 1억원 이상 증감 사업(2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서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 감	재원
증감사유(요지)					
인력운영비(총괄)	회계과	117,731	122,658	4,927	자체
'26년 연봉 결정액 및 본봉 연계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증액분 반영					
인력운영비(맞춤형통합돌봄)	회계과	198	-	△198	보조
2026년 무한돌봄센터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액 감					

【검토의견 - 일반회계】

(Ⅱ-1)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계상

<현황>

- 2025회계연도 결산 확정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393억 4,600만원 중 2,195억 200만원(91.7%)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계상되었고, 198억 4,300만원이 미계상 상태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계상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5회계연도 결산확정액(A)	2026년도 제3회추경후 세입계상액(B)	계상률 (B/A)	미계상액 (A-B)	2026년도 제3회추경 증액분
239,346	219,502	91.7	19,843	49,614

주) 미계상액은 원 단위로 산출한 값을 절사한 것으로, 표의 A·B(절사값) 차이(19,844)와 1백만원의 단수 차이가 있음.

<검토의견>

-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누적에 대한 우려와 적극적인 투자 및 전환 검토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주문은 계속되어 왔음(제247회 2023회계연도 결산, 제257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전년도 결산 미계상액 1,696억 9,900만원 중 50.3%인 855억 300만원만 계상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회차의 계상률 91.7%는 상당한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198억 4,300만원이 여전히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미계상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Ⅱ-2)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수납 과목의 보완 미이행

<현황>

- 과징금·과태료·이자수입 등 매년 반복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예상액과 수납액의 간극을 좁힐 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주문이 반복되어 왔고, 집행부도 이를 수용한 바 있음(제257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채 1천만원 이상 수납된 세외수입 과목은 71건 80억 4,700만원이며, 이 중 36건은 3개년 연속 발생하였음.
- 이 가운데 보조금 반환수입(223)과 기타수입(224) 계열 3개 목(目)은 매년 반복 수납되고 있어 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223-02)과 위탁비반환수입(223-03)은 2026년도 본예산 세입목의 목록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계상되지 아니하였음.
 - 그외수입(224-07)은 2026년도 본예산에 15억 800만원이 계상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9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44억 2,400만원이 되었으나, 증액분은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위탁보상비 정산차액 환불금 19억원 등 개별 정산금의 사후 반영으로서 반복 수납 실적을 근거로 한 사전 계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예산 미편성 수납 과목의 2026년도 계상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목	2025년		2026년	
	예산현액	수납액	본예산액	3회추경액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94	4,616	-	-
223-03 위탁비반환수입	328	1,277	-	-
224-07 그외수입	6,557	10,887	1,508	4,424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2025회계연도에 예산현액 대비 120.4% 초과한 46억 1,600만원이, 위탁비반환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89.3% 초과한 12억 7,7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음에도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는 두 과목이 모두 편성되지 아니하였는바, 반복 발생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 보조사업·위탁사업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환금은 사업 종료 시점과 정산 일정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드시 계상하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Ⅱ-3) 지방세 추계 무변동

<현황>

- 지방세수입은 본예산 편성액 4,321억 9,200만원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아니하였음.

[지방세 회차별 계상 추이]

(단위 : 백만원)

과목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안)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432,192	432,192	432,192	432,192	-

<검토의견>

- 지방세 추계 오차의 축소와 추가경정예산에서의 세수 재추계 반영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주문은 매 결산 심사마다 반복되어 왔음(제247회 2023회계연도 결산, 제257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 2025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4,380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4,256억원)의 102.9%를 수납하였고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100%를 하회한 사례가 없음에 비추어, 지방세 추계를 회계연도 중 한 차례도 조정하지 아니한 것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집행부가 제1회 추경 심사에서 세입이 감소 추세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지방세 추계가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상향·하향 어느 방향으로도 조정되지 아니한 점은, ‘추경 시 세수 재추계 반영’ 주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Ⅱ-4) 보통교부세 당초산정액 감소와 세입예산 계상 추이

<현황>

- 2026년도 파주시 보통교부세 당초산정액은 2,840억 5,700만원으로 2025회계연도 보통교부세 결산액 3,101억 2,400만원보다 260억 6,700만원(8.4%) 적으며, 최근 3개 연도 중 가장 낮은 수준임.

[보통교부세 당초산정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당초산정액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2024	302,178	△36,800	△10.8
2025	310,124	7,946	2.6
2026	284,057	△26,067	△8.4

※ 근거 : 행정안전부 각 연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 산정액 가운데 자체노력 반영액은 기준재정수요액(△56억 5,200만원)과 기준재정수입액(172억 6,900만원)에서 모두 페널티를 부과받은 바, 두 항목을 합하면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229억 2,100만원 축소시키고 있음.

[2026년도 보통교부세 당초산정 내역(파주시)]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액 (A)	기준재정수입액 (B)	재정부족액 (A-B)	재정력지수 (B/A)	감액	보통교부세 당초산정액
합계 1,052,488	합계 647,113	405,375	0.615	△21	284,057
기초수요 868,383	기초수입 400,904				
보정수요 189,757	보정수입 228,940				
자체노력 △5,652	자체노력 17,269				

※ 근거 : 행정안전부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 한편 최근 3개 연도의 보통교부세 본예산 계상액을 비교하면 2026년도에는 본예산 계상액이 3,000억원으로 직전 2개 연도의 2,500억원보다 500억원(20.0%) 상향되었으며, 당초산정액 대비 계상비율도 105.6%로 높아졌음.

[보통교부세 본예산 계상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당초산정액(A)	본예산 계상액(B)	계상액 비율(B/A)
2024	302,178	250,000	82.7
2025	310,124	250,000	80.6
2026	284,057	300,000	105.6

<검토의견>

1) 보통교부세 당초산정액 감소

-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그 부족액을 기초로 교부되는 것인바, 국세 수입이 축소되거나 자체 재정력이 개선되면 교부액이 감소하는 구조임.
- 2026년도 당초산정액이 전년 대비 260억 6,700만원(8.4%) 감소하여 최근 3개 연도 중 최저 수준이 된 것은 이러한 구조가 현실화된 것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의 61.5%에 그치는 재정력에도 불구하고 교부액이 줄어든 점은 지방교부세를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재원으로 전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자체노력 반영액이 재정부족액을 229억 2,100만원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자체노력 항목별 산정 결과를 점검하여 감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확보하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의 감산 폭이 전년 대비 52억 5,600만원 축소된 것은 개선으로 볼 수 있음.

2) 보통교부세 세입예산 계상 추이

- 2024·2025회계연도에는 보통교부세 본예산 계상액이 당초산정액의 80% 수준에 머물러 매년 상당액이 미계상되었으나, 2026년도에는 당초산정액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계상되어 긍정적인 변화로 보임.
- 2025년 말 국세 규모 축소에 따른 확정 내시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59억원이 감액되어 한때 본예산 계상액이 확정 내시액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정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2026. 4. 10. 의결)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209억원※1) 증액(전국 공통 7.3%)되면서 최종 확정액이 본예산 계상액을 상회하게 되었음. 내시액 변동이 자치단체가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본예산의 적극적 계상은 결과적으로 타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제2·3회 추가경정예산의 증액 208억 5,200만원은 위 추가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편성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이었던바 그 소요에 상응하는 52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156억원은 이번 회차에 반영되었음.
- 한편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증액을 반영하면 2026년도 보통교부세는 3,049억 5,200만원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액 대비 51억 7,200만원(1.6%) 감소에 그침. 다만 당초산정액 자체가 최근 3개 연도 중 가장 낮고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자체노력 감산에 있는 만큼, 교부세 감소가 추세로 굳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전제로 한 재원 배분 계획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검토의견 II-9 참조).

[2026년도 보통교부세 당초산정액과 회차별 계상액 대조]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상액	당초산정액과의 차액	차액률
2026년도 본예산	300,000	15,943	5.6
제1회 추경	284,100	43	0.0
제2회 추경	289,352	5,295	1.8
제3회 추경(안)	304,952	20,895	7.3

※1) 행정안전부 「2026년 보통교부세(추경)」 자료로 억원 단위 표기임.

(Ⅱ-5) 보조금 반납금의 세입·세출 불일치

<현황>

-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보조금은 교부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는바, 그 반납액은 세입·세출 과목에 짝을 이루어 계상되어야 함.

[보조금 반납금 계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세입		차액(A-B)
	과목	계상액(A)	과목	계상액(B)	
계		14,377		12,159	2,217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7,857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2-01)	7,614	243
시·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2)	6,325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2-02)	4,545	1,780
기타반환금 등	기타반환금 등 (802-03)	194	-	-	194

주) 세출 802-03 기타반환금 등은 과오납금·상환금 등으로서 대응하는 세입 목(目)이 없음.

- 이번 회차의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세출이 세입보다 22억 1,700만원 많으며, 그 대부분인 17억 8,000만원이 시·도비보조금에서 발생하고 있음.
- 보조금 반납금 세입 계상액 121억 5,900만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보조금 실제반납액과 같은 금액이므로, 초과분 22억 1,700만원은 결산으로 확정된 반납액 밖의 금액임.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세출 과목 802-01·802-02를 각각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그 이자 반납금’·‘시·도에 반납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그 이자 반납금’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대응하는 세입 과목 712-01·712-02는 사용잔액만을 설정하고 있는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것 자체는 이자 반납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구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임.
- 또한 802-01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인 이번 회차에 반납금을 계상한 것은 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초과분 22억 1,700만원을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802-01 국고분 2억 4,300만원은 대응 세입(712-01) 계상액의 3.1% 수준으로 이자 반납분으로 설명될 수 있음.
 - 802-03 기타 반환금 1억 9,400만원은 대응 세입목이 없는 과오납금 등에 해당함.
 - 802-02 시·도비분 17억 8,000만원은 대응 세입(712-02) 계상액 45억 4,500만원의 39.1%에 이르는 규모여서 이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움.
- 802-02 초과분의 산출 내역과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Ⅱ-6) 세출 증액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현황>

- 시설비및부대비 480억 1,200만원은 93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었는데, 2026회계연도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이 42건 141억 5,200만원으로 29.4%를 차지하고 이 중 이번 회차에 처음 계상되는 사업이 36건 140억 6,600만원임. 의무·재량 구분으로는 재량 편성이 65건 314억 5,200만원(65.5%)이고, 자원별로는 자체재원이 68.9%·국·도비 등이 31.0%임.

[시설비및부대비 증액 구성(신규-계속사업 구분)]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수	금액	구성비
계	93	48,012	100.0
계속사업	51	33,859	70.5
신규사업	42	14,152	29.5
이전 회차 최초 계상	36	14,066	29.3
이번 회차 증감(기정액 有)	6	86	0.2

주) '신규사업'은 2026회계연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임.

[시설비및부대비 증액 구성(의무·재량 구분)]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수	금액	구성비
계	93	48,012	100.0
재량	65	31,452	65.5
보조의무	23	10,105	21.1
법정의무	5	6,454	13.4

주) 이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조건별세출예산조회(세부사업별)」의 '조정의무재량구분'에 따른 구분이며, 법정의무는 법령이 지출 의무 등을 정하는 법정지출사업, 보조의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분임.

- 한편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은 세출예산안 요구 시 유의사항으로 “연도 내 집행가능액 범위 내에서 예산 요구”를 들면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공정별 종합적·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후 해당연도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이월·불용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이월·불용 최소화 규정을 신설하면서 최근 2개 연도 집행률 하위 통계목(전국 평균)으로 시설부대비·감리비·시설비를 적시하고 있는바, 이번 회차 증액의 중심인 시설비및부대비가 이에 해당함.
- 아울러 증액 5억원 이상 57개 사업의 사업기간과 집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사업기간 자체가 연내 집행을 예정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집행률이 낮은 상태에서 증액되는 사업이 6건 확인됨.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증 액	사업기간	집행률	비 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캠프하우스 도로 개설)	800	2018년 ~ 2026. 12.	26.9	Ⅱ-9
전선 지중화 구간 정비	704	2026. 9. ~ 2027. 4.	-	Ⅱ-7
시도41호선(갈현~법흥) 도로확포장	600	2026. 9. ~ 2030. 12.	-	Ⅱ-7
소하천정비(윗불기천)	502	2021. 9. ~ 2027. 10.	28.4	-
철도망 구축 대응 전략 수립	500	2026. 12. ~ 2028. 12.	-	-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500	2024. 1. ~ 2027. 6.	12.7	-

주) 집행률은 2026. 7. 31. 기준이며, 비고란은 해당 사업을 사전절차 또는 집행부진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검토의견의 번호임.

<검토의견>

- 적극적인 세입 계상은 그 재원으로 편성한 사업이 실제로 집행될 때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특히 편성된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검토의견 II-1 참조), 실제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사업들이 상당 부분 다음연도로 이월됨으로써 세출 미집행 수준이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이번 회차에서 확인하여야 할 것은 편성 규모보다 집행관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회차 시설비및부대비는 자체재원 68.9%·재량 편성 65.5%이고 이번 회차에 처음 계상되는 사업이 36건 140억 6,600만원인바, 시설사업의 통상적인 설계·계약·공정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사업별로 ① 설계·인허가 등 선행절차의 완료 여부, ② 계약 예정 시기와 공정 계획, ③ 연내 집행 예정액 및 이월 예상액 등의 확인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과 이월 예상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철도망 구축 대응 전략 수립] 5억원은 용역기간이 2026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번 회차 의결 시점부터 착수 예정 시점까지 3개월 가량 남아 있는바 연내 집행 가능액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고, [소하천정비(윗불기천)]과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7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각각 28.4%·12.7%에 그친 상태에서 증액되는 것임. 사전절차 또는 집행부진의 관점에서 확인이 필요한 3개 사업까지 더하면 증액 5억원 이상 사업 중 6건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별 집행계획으로 제출받아 편성 단계에서 이월 예상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검토의견 II-7·II-9 참조).
-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주문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거쳐 본예산에 편성” (제255회 2025년도 제2회 추경) 원칙에 비추어, 이번 회차 최초 계상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되,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은 편성 단계에서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Ⅱ-7) 법정 사전절차 미완료 상태의 예산 계상

<현황>

- 「지방재정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미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제37조제1항제1호), 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6조제4항).
- 나아가 제33조제11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수립 당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을 예외로 하고 있음.
- 한편 재정지출 사전협의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과 「과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과주시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지침」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전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로, 「2026년도 과주시 예산안 편성지침」은 협의 결과가 부동의인 경우 재검토 또는 사업중단하도록 하면서 “협의대상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재정투입 배제”한다고 정하고 있음.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대상]

구 분	신규사업	기존사업
일반사업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또는 30% 이상 증액
용역사업	모든 학술·종합기술·공사설계 용역	30% 이상 증액
행사·축제성 사업	금액 불문 모든 사업	20% 이상 증액
민간지원 보조사업	1천만원 이상	20% 이상 증액

- 또한 같은 지침(113쪽)은 사업별 설명자료 ‘사전절차 이행여부’란의 표기를 재정지출 사전협의는 ‘이행/미이행/비대상’, 중기지방재정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기타 사전절차는 ‘반영/미반영/비대상’, 투자심사·용역과제 사전심의는 ‘적정/조건부/비대상’ (이행 예정인 경우 ‘이행예정’)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연례 반복사업·경상적 사업·단순 유지관리성 사업·자연적 증가 등은 ‘비대상’으로, 신규·확대 자체사업과 신규·확대 도비보조사업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이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별 설명자료의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전수 확인한 결과 16개 사업에서 미이행·미반영·추진중·예정·재검토 표기가 확인됨. 이 중 행정운영경비 등 재정지출 사전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4건과 감액사업 1건을 제외하면 11개 사업 59억 5,400만원임.

[사전절차 미이행·미완료 표기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서	중 액	사전절차 표기
도시재생사업(평화로드 문산)	균형개발과	2,970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예정’
문산해누리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장애인과	811	재정지출 사전협의 ‘추진 중’ (26. 7.)
전선 지중화 구간 정비	에너지과	704	재정지출 사전협의 ‘미반영’ (2026. 8. 3.)
시민화합 체육대회	체육과	624	투자심사 ‘예정’
시도41호선(갈현~법흥) 도로확포장	도로건설과	600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투자심사 ‘대상’ (2026. 8.)
토양개량제 지원	농업정책과	58	재정지출 사전협의 ‘추진중’ (2026. 7. 14.)
향양2리 도로환경 개선	도로건설과	55	재정지출 사전협의 ‘미이행’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문산보건센터	49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정책과	40	재정지출 사전협의 ‘추진중’ (2026. 7. 14.)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체육과	37	투자심사 ‘재검토’ (2025. 10. 31.), 기타 ‘이행 예정’
'26년 6월 우박피해 재해복구비	농업정책과	6	재정지출 사전협의 ‘추진중’

주1) 편성지침이 ‘비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정한 행정운영경비·경상적 사업·단순 유지관리성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과 감액사업, 재정지출 사전협의란에 ‘대상’으로 적으면서 협의일자를 함께 기재한 사업은 제외함.

주2) 사전절차 표기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른 것으로, 해당 쪽수는 도시재생사업(평화로드 문산) 도시산업 93쪽, 문산해누리노인복지관 운영 자치행정 193쪽, 전선 지중화 구간 정비 자치행정 110쪽, 시민화합 체육대회 문화환경 62쪽, 시도41호선(갈현~법흥) 도로확포장 도시산업 74쪽, 토양개량제 지원 문화환경 194쪽, 향양2리 도로환경 개선 도시산업 76쪽,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문화환경 154쪽,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문화환경 191쪽,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문화환경 85쪽, '26년 6월 우박피해 재해복구비 문화환경 206쪽임.

<검토의견>

- [시도41호선(갈현~범흥) 도로확포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다목(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에 따라 파주시장이 직접 투자심사하는 자체심사 대상이며, 같은 영 제41조의2 관련 별표의 투자심사 제외 사업※2)에도 해당하지 않음.
-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되므로(제37조제4항), 설명자료의 ‘대상’ 표기는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1항은 투자심사를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 시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도록 정하는바,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의 투자심사 진행이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여부, ② 투자심사 결과가 확정 전 실시설계비 계상 근거, ③향후투자액 170억원의 재원 조달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2025. 10. 31.)로 기재되어 있음. 이 사업은 총사업비 313억원 전액 시비 사업으로 기투자액이 1억 5,000만원, 향후투자액이 311억 1,200만원에 이르며, 이번 계상액 3,750만원은 파크골프장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임.
-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은 투자심사 결과에 대하여 “(적정·조건부 추진) 예산편성 등 사업 추진 가능 / (재검토·부적정) 예산편성 불가”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지침이 “재검토 사업은 지적사항 보완 후 재상정 가능”이라고 정하고 투자심사 의뢰시기를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로 두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투자심사에 앞서는 단계로 하고 있는바, 이번 계상액이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상정하기 위한 용역비라면 그 편성 자체를 절차 위반으로 볼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2) 도로 관련 제외 대상은 단순개량·유지보수,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에 한정됨.

- 다만 그렇게 볼 경우 기본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총사업비 313억원 규모의 사업을 투자심사에 의뢰한 것이 되어 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사업은 2025회계연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8,925만원(59.5%)을 집행하고 용역과제 사전심의도 이행(2025. 8. 12.)한 바 있어 당시 수행한 용역과 이번 용역의 관계가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2025년도 이월액 6,075만원이 2026년 7월 31일까지 전혀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750만원이 더해지는 것인바, ①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의 지적사항과 보완 내용 및 재상정 예정 시기, ② 2025회계연도에 수행한 용역의 내용·결과와 이번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차이, ③ 2025년도 이월액 6,075만원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유와, 이월액으로 충당할 수 없어 3,75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근거 ④ 총사업비 313억원 전액 시비의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도시재생사업(평화로드 문산)] 29억 7,00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행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이번 회차 성립전예산 편성분 중 최대 규모이기도 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립전으로 먼저 집행을 것인지와 계획 반영 예정 시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검토의견 II-8 참조).

○ [문산해누리노인복지관 운영] 8억 1,100만원은 재정지출 사전협의를 ‘추진 중’ (26. 7.)으로 기재되어 있음. 사업기간이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인바, 3개월분 운영비 산출내역과 사전협의 완료 예정 시기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시민화합 체육대회] 6억 2,400만원은 투자심사가 ‘예정’으로 기재된바, 행사 시기는 2026년 9~10월로 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임. 특히 본 사업은 총사업비 9억 1,400만원인바, 편성지침상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행사성 사업의 투자심사는 경기도 심사 대상임. 도 제3차 투자심사는 7월까지 의뢰, 9월까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사가 개최될 수 있어 보임. 이에 ① 투자심사 의뢰 여부와 심사 예정 시기, ② 심사 결과 확정 전 행사를 개최할 경우의 조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 사업은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예산 2억 9,000만원 중 2억 7,500만원을 시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예산으로 변경하고 행사 비용 9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구조임. 2026년 7월까지의 집행액은 파주읍 주민화합 체육대회(2026. 3. 28.) 1,450만원뿐인바, 읍면동당 1,450만원씩 균등 배정된 예산 중 파주읍을 제외한 19개 읍면동 몫 전액을 시 통합 행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임.
- 신규 편성액 9억원 중 읍면동 지원 6억원은 20개 읍면동에 각 3,000만원씩 배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각 읍면동이 자체 대회 대신 통합 대회에 참가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읍면동당 지원액이 1,45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미 자체 대회를 마친 파주읍도 동일한 금액을 배분받게 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읍면동 지원 단가를 1,45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 산정 근거와 자체 대회를 이미 개최한 파주읍에 통합 대회 지원금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의 형평성, 읍면동에 배분되는 6억원의 용도와 정산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선 지중화 구간 정비]의 재정지출 사전협의 ‘미반영’ 상태에서의 계상 근거와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재정지출 사전협의를 ‘미이행’ 또는 ‘추진중’ 으로 기재된 5개 사업 9억 7,000만원이 이번 회차에 계상되어 있음. 앞서 본 재정투입 배제 원칙과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사전절차란의 표기가 편성지침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재된 사례가 확인됨. 사전협의란은 ‘이행/미이행/비대상’ 으로만 적도록 되어 있으나 농업정책과 3개 사업은 ‘추진중’ 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란은 ‘반영/미반영/비대상’ 으로 적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41호선(갈현~범흥) 도로확포장]은 ‘대상’ 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기재 기준의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Ⅱ-8) 성립전예산 편성 규모와 사후 의결

<현황>

- 성립전예산(성립전 사용예산)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와 재해구호 및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의 소요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집행하고 그 금액을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전’임을 명시하여 계상함으로써 사후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임(「지방재정법」 제45조).
- 이번 회차 일반회계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세부사업이 41개 108억 8,200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 증액 1,293억 2,600만원의 8.4%에 해당함.

[성립전예산 편성 사업의 자원별 구성]

(단위 : 백만원)

계	도비보조금	균특보조금	특별교부세	자체재원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10,882	3,483	2,019	1,950	1,762	1,095	572

- 규모가 큰 사업은 [도시재생사업(평화로드 문산)] 29억 6,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8억 3,1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7억 5,000만원, [적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7억 2,500만원 등임.
- 특별교부세는 계상액 37억 1,000만원 중 6건 19억 5,000만원(52.5%)이 성립전 편성분으로, [법원읍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5억원), [금촌3동 송화로(복지센터 앞) 보행데크 설치](5억원),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3억원), [한울도서관 시설개선](3억원),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1억 9,000만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연풍초)](1억 6,000만원) 등임.

<검토의견>

-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가 정한 요건 아래 인정되는 제도이고, 집행에 앞서 의원들에게 사전 서면보고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이용 자체를 문제로 볼 것은 아님.
- 다만 제도의 취지상 확인이 필요한 것은 요건의 충족 여부와 규모인바, 성립전예산에 관하여는 제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사용을 자중할 것” 이 주문된 바 있음.
- 이번 회차의 성립전 편성 규모는 108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증액의 8.4%에 이르는바, 각 사업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재해구호·복구 소요경비’ 라는 제4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사전 서면보고 이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한편 특별교부세 재원 6건 중 [한울도서관 시설개선]은 시설비및부대비 증감이 0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 자체재원 3억원을 감액하는 재원 교체임. 사업비가 늘어나는 나머지 사업과 성격이 다르므로 재원 교체의 경위와 대체된 시비 3억원의 활용 계획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Ⅱ-9) 전년도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증액 편성

<현황>

-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 20건 중 9건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되었으며, 증액 규모는 144억 2,800만원임.
- 이 중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개 사업의 증액 규모가 106억 5,900만원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함.

[전년도 집행부진 사업의 제3회 추경(안) 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	2025년 집행률	2025년 명시이월액	제3회 추경(안) 증액
계			14,428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1.3	3,631	3,763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3.1	3,484	3,456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7.4	3,419	2,915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9.1	3,091	525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3.3	2,520	2,100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29.7	7,529	650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캠프하우스 도로 개설)	26.6	-	800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20.6	1,304	177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	19.5	2,060	41

<검토의견>

-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개 사업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38억 7,000만원이 증액된 후 136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증액분의 98.2%가 이월된 이력이 있으며, 준공 예정 시기는 2027년 6월임.

- 당해연도 집행 완료와 관행적 명시이월의 지양에 대한 과거 우리 위원회의 주문에 대해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뒤 편성하여 즉시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증액이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은 아니나, 같은 회차에 같은 사업에 대하여 유사한 규모의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3회 추경 증액 → 명시이월」의 구조가 2개 연도 연속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4개 사업의 공정 진행률과 증액분의 연내 집행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의 경우 세입에 공사 계약보증금 4억 4,500만원, 미정산 선금 반납금 3억 7,000만원, 반환액 이자 4,795만원 등 8억 6,300만원이 계상되고 세출에 2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시공사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가 제출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 해지 경위, 기성 부분 처리, 재발주 일정 및 연내 집행 가능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Ⅱ-10) 계속비 사업조서 미편제 상태의 연부액 변경 반복

<현황>

-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은 계속비를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채무부담행위·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은 계속비의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계속비 3개 사업의 연부액 72억 8,400만원(기정 대비 100.4%)이 변경되며, 나머지 계속비 사업 7건은 증감이 없음.

[계속비 연부액 변경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캠프하우스 도로 개설)	법원1 일반산업단지 복측진입도로 개설
담당부서		기후위기대응과	도로건설과	기업지원과
기정예산(A)		6,104	-	1,150
제3회 추경(안)(B)		12,418	800	1,320
증감(B-A)		6,314	800	170
증감률		103.4	순증	14.7
계속비 사업 조서 내용 (‘26. 본예산)	총사업비	35,602	11,100	7,200
	사업기간	2022년~2029년	2023년~2027년	2023년~2026년
	2026년 연부액	6,104	-	1,150
	비고란	실시설계 기준 세부 공사비 산정, 물가상승 반영 등에 따른 계속비 총사업비 변경(당초 313억 → 변경 356억, 증 43억),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반영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당초 30개월 → 변경 36개월, 증 6개월)	2024년까지 예산액 11,100 중 지출액 4,646·지출잔액 6,453	복측진입도로 사업구역과 공사구간이 중첩되는 기반시설 공사(공업용수도 및 오폐수관로 연결공사)의 동시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주1)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서에는 계속비 사업조서가 편제되지 아니하여 2026년도 본예산 예산서 조서를 기준으로 함.

주2) 파주LCD의 총사업비는 2022년도 예산 714백만원을 제외한 조서상 금액이며, 조서 사업개요란 및 제3회 추경 사업설명자료의 총사업비(363억원)는 이를 포함한 금액이며, 연차별 연부액은 2026년 6,104·2027년 12,800·2028년 이후 15,754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주3) 캠프하우스는 조서상 2025년·2026년 연부액이 모두 0으로 계상되어 있음.

- 한편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서에는 계속비 사업조서가 편제되지
아니함.

[예산서 계속비 사업조서 편제 이력]

회계연도	본예산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최종추경 첨부
2021	○ 6건	×	×	○ 4건	-	-	편제
2022	○ 6건	×	×	○ 6건	-	-	편제
2023	○ 9건	×	×	×	×	○ 10건	편제
2024	○ 9건	×	×	×	-	-	미편제
2025	○ 11건	×	×	×	×	-	미편제
2026	○ 10건	×	×	×	-	-	-

- 조서가 편제되지 아니한 2024회계연도 이후에도 연부액 변경은
계속되어 왔으며, 이번 회차를 포함하면 11건이 됨.

[계속비 사업조서 미편제 기간의 연부액 변경]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세부사업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 회차
2024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478	100	△1,378	제2회 추경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	1,000	1,750	750	제1·2회 추경
2025	기초생활기반확충(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1,573	-	△1,573	제2회 추경
	기초생활기반확충(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911	2,485	1,573	제2회 추경
	평평한 마을 조성	498	530	32	제2회 추경
	기초생활기반확충(위전-영태 도로확포장)	1,250	3,852	2,602	제3회 추경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450	126	△324	제4회 추경
	야동-금송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	2,000	12,000	10,000	제4회 추경
2026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104	12,418	6,314	제3회 추경(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캠프하우스 도로 개설)	-	800	800	제3회 추경(안)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	1,150	1,320	170	제3회 추경(안)

<검토의견>

-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계속비 여부와 총사업비·연부액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예산서에 계속비 조서가 편제되지 아니하면 의회는 연부액 변경 사실과 그 규모는 물론 변경 대상 사업이 무엇인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단이 없음.
- 이번 회차에 연부액이 변경되는 3개 사업은 모두 조서 미편제 상태에서 연부액이 변경되었거나 조서가 사후에 소급 반영된 이력이 있는 사업임.
 - [과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2024년도 제2회 추경(△13억 7,800만원), 2025년도 제4회 추경(△3억 2,4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3개 연도 연속 조서 없이 연부액이 변경되는 것임.
 -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은 2024년도 제1·2회 추경에서 연부액이 7억 5,000만원 변경된 바 있음.
 -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은 2024회계연도에 연부액 111억원이 계상되고 84억 6,600만원이 계속비이월되었음에도 2024년도 예산서 조서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가, 2025년도 본예산 조서에서 “‘24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라는 사유와 함께 사후에 반영된 사업임.
- 2021~2023회계연도에는 최종 추가경정예산에 조서가 편제되었으나 이후 편제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추경 심사 단계에서 계속비 사업조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연부액 산정이 실제 공정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개별 사업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과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2026년 연부액이 103.4% 증액되었음에도 이것이 총사업비 356억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2027년 이후 연부액을 앞당긴 것인지, 총사업비 자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인지 제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 계속비 총사업비의 변경은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액의 성격과 연차별 재배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증액 사유는 “2026년 4월 착공” 이나 2026. 7. 31. 기준 집행률이 0.1%에 그치고 있어 증액분 63억 1,400만원의 연내 집행계획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임.
- [캠프하우스 도로 개설]은 조서상 2025년·2026년 연부액이 모두 0으로 계상된 사업에 8억원이 신규 계상되는 것인바, 2026년 연부액을 0으로 계상하였던 경위와 이번 신규 계상의 근거, 잔여 총사업비(64억 5,300만원) 대비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Ⅱ-11) 계속비 연한 초과에 대한 의회 의결 여부

<현황>

-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은 계속비 지출 연한을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26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상 [과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사업기간이 5년을 초과함.

[계속비 연한 대조 - 2026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사 업	조서상 사업기간	연한	5년 초과
과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2022년~2029년 (비고란: “’23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23년~’29년)”))	7~8년	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캠프하우스 도로 개설)	2023년~2027년	5년	-
법원1 일반산업단지 복측진입도로 개설	2023년~2026년	4년	-

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서에는 계속비 사업조서가 편제되지 아니하여 2026년도 본예산 예산서의 조서를 기준으로 함.

- 연도별 계속비 사업조서를 대조한 결과, 사업기간 연장은 2026년도 본예산 조서에서 처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과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조서 변동 이력]

(단위 : 백만원)

연도	자료	사업기간	총사업비	완충저류시설
2023년도	제5회 추경 조서	2022~2027년	31,308	5,700㎡
	본예산 사업설명서	2022~2026년	-	10,000㎡
	본예산 조서	미등재	-	-
2025년도	본예산 조서	’23~’27년	31,308	5,700㎡
	본예산 사업설명자료	2022~2027년	-	5,700㎡
2026년도	본예산 조서	2022·2029년(’23년·’29년)	35,602	5,700㎡
	본예산 사업설명서	2022~2029년	-	5,700㎡(사업개요) / 5,700㎡(산출내역)
	제3회 추경 사업설명자료	2022~2029년	36,316	5,700㎡

주) 조서 표의 총사업비는 2022년도 예산 714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조서 사업개요란 및 제3회 추경 사업설명자료의 총사업비(363억원·36,316백만원)는 이를 포함한 금액임.

<검토의견>

- 연한 연장은 2026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에 담겨 예산안으로 의결된바, 사업기간 변경 자체는 의회에 현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다음 두 가지에 비추어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한 연장의 의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해 보임.
 - 조서 비고란은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반영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당초 30개월 → 변경 36개월, 증 6개월)” 으roman 기재되어 있어, 조서상 종료연도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연장된 것과 설명이 일치하지 않음.
 - 조서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한 연장이라는 표시가 없어, 5년 초과 연장에 대한 의결이라는 점이 의안에 드러나지 않음.
- 아울러 사업의 내용이 회차마다 달리 기재되고 있어 계속비 의결의 기준이 되는 사업 범위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사업기간: 2027년(2023년도 제5회 추경 조서) → 2026년(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 2027년(2025년도) → 2029년(2026년도 본예산 조서)으로 단축과 연장이 반복되고 있음.
 - 완충저류시설: 단위가 m^3 와 m^2 로 혼용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는 같은 문서 안에서 사업개요란 $5,700m^2$ · 세부 산출내역 $5,700m^3$ 로 서로 다르게 기재하고 있음. 제3회 추경 사업설명자료는 $5,700m^3$ 로 통일되어 있어 계속비 사업조서의 m^2 표기가 옳기로 보임. 다만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의 $10,000m^2$ 는 수치 자체가 달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연계관로: 4.5km → 약 4.3km(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자료) → 4.1km(2026년도 본예산 조서)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도 본예산의 경우 같은 예산서의 조서(4.5km)와 사업설명자료(약 4.3km)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 명칭 또한 사업개요란은 “연계관로”, 세부 산출내역은 “차집관로”로 혼용되고 있음.

- 특히 연계관로가 0.4km 축소되었음에도 총사업비는 313억원에서 356억원으로 43억원 증가하였으나, 조서 비고란은 “실시설계 기준 세부 공사비 산정, 물가상승 반영 등” 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사업량 축소분이 사업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음.
-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이 계속비의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것은 사업 범위가 특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총사업비·사업기간·사업량이 회차마다 달라지고 그 변경 사유가 조서에 충분히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부액만 변경되는 것은 계속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Ⅱ-12) 경기도 내시 부족분의 추가 편성

<현황>

- 사업별 설명자료의 증감사유를 확인한 결과, 상급기관의 내시가 연간 소요에 미치지 못하여 그 부족분을 이번 회차에 편성한 사업이 13건 45억 8,800만원 확인됨. 대부분 “경기도에서 9개월분만 내시”, “12개월 사업기간 중 9개월분만 반영” 으로 기재되어 있음.
- 대응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뉨. 첫째는 도비를 포함하여 잔여 기간분을 편성하는 것임.

[④ 잔여 기간분을 도비 포함하여 편성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서	증 액	재 원	당초 편성	이번 회차 편성
계 (5건)		3,415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교통정책과	1,984	도30·시70	12개월 중 9개월분	3개월분 등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매칭)	버스정책과	836	도30·시70	12개월 중 9개월분	3개월분
노인생활안정(월동난방비)	노인장애인과	514	도30·시70	5개월 중 3개월분	2개월분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54	도40·시60	12개월 중 9개월분	3개월분
노인생활안정(건강보험료)	노인장애인과	26	도30·시70	12개월 중 9개월분	3개월분

주1) ‘당초 편성’ 은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분임.

주2)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의 증액에는 3개월분 외에 차고지 휴게실 개선 등 3,438만원이, [노인생활안정(월동난방비)]에는 2개월분 외에 지원 대상 증가분이 각각 포함되어 있음.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의 3개월분 도비는 ‘내시 예정’ 상태임.

- 둘째는 도비 없이 시비 100%로 별도의 세부사업을 두어 부족분을 부담하는 것임. 사업명 끝에 ‘(자체)’ 가 붙은 세부사업들이 이에 해당함.

[② 시비 100%로 별도 편성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서	증 액	도비 내시 상황	시비로 부담한 부족분
계 (7건)		838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운영지원 6종)(자체)	노인장애인과	418	당초 9개월분 반영	특수근무수당·종사자 인건비 3개월분, 간병인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공동생활가정)(자체)	노인장애인과	134	변경 내시로 감액	종사자 인건비 3개월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기거주시설)(자체)	노인장애인과	133	변경 내시 후에도 9개월분만 반영	종사자 인건비 3개월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개인운영 거주시설)(자체)	노인장애인과	47	당초 9개월분 반영	종사자 인건비 3개월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	노인장애인과	43	도 본예산에서 감액	사업비 3개월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특수근무수당)(자체)	노인장애인과	42	당초 9개월분 반영	특수근무수당 3개월분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자체)	동물관리과	21	인건비 조기 소진	10~12월분 인건비

주) ‘도비 내시 상황’ 등은 각 사업의 사업별 설명자료 증감사유를 요약한 것임. 당초 내시액과 변경 내시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셋째는 같은 사업 안에서 도비는 그대로 두고 시비만 증액하는 것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청년청소년과)이 이에 해당함.

[③ 같은 사업 내에서 시비만 증액한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구 분	제2회 추경까지	제3회 추경(안)	증 감	구성비 변동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	3,388	3,723	334	
	도비	2,371	2,371	-	70.0 → 63.7
	시비	1,016	1,351	334	30.0 → 36.3

주)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의 재원부담비율은 도비 70%·시비 30%임. 설명자료의 재정투자계획은 시비 증액분의 비교란에 “3분기 부족분 증액”으로, 증감사유는 “도 추경 전, 3분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비 매칭분 증액”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음.

- 규모가 가장 큰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은 파주도시공사(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하여 특별교통수단 44대·바우처택시 65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번 증액 19억 8,400만원 중 3,438만원은 도비 9개월분 내시에 따라 보류되었던 금촌 차고지 휴게실 개선(2,907만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입(531만원)임.

- 이 사업은 2023~2025회계연도에는 매년 3억 8,900만원~7억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2026회계연도에는 7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100.0%로 예산현액이 전액 소진되었음.
- 한편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대성동 마을회관)] 7억 1,300만원(균형개발과)은 설명자료가 국비 4억 9,900만원 · 도비 6,400만원을 ‘가내시’ (2026. 6. 19.)로 기재하고 있음.

<검토의견>

- 연간 소요가 확정적인 계속사업에 대하여 상급기관이 9개월분만 내시하고 시가 나머지를 하반기에 메우는 방식이 복지 · 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편성은 예산이 사업의 연간 소요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게 하고, 잔여 기간분의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이 좌우되게 하는 것임.
-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명 끝에 ‘(자체)’를 붙인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시비로 100% 별도 편성한 사업은 7개 8억 3,800만원임.
 - 부족분은 7개 사업 모두 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특수근무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인바, 이번 회차가 의결되기 전까지 그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임.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경우 도비 매칭 본사업이 3,230만원 감액되는 반면 같은 이름의 ‘(자체)’ 세부사업이 1억 3,400만원 신설되는바, 도비가 빠진 자리를 시비가 그대로 대체하고 있음.
 - 본사업 2건의 설명자료는 “경기도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태이나 부족액이 인건비 항목이므로, 시비 추가 편성 필요”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도비 교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비를 먼저 편성하는 것으로 보임.

-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은 다른 사업들과 달리 3개월분의 재원이 여전히 ‘도비 추가 내시 예정’ 상태임.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고 세입은 확정성을 갖춘 재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바, 확정되지 아니한 재원을 전제로 한 계상으로 보임.
- 경기도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 사업의 3개월분 가운데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3).
- 2026년 7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100.0%로 예산이 사실상 전액 소진되어, 이번 회차가 의결되기 전까지의 운영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임.
- [청년기본소득 지급] 3억 3,400만원은 별도 시비 사업 신설 없이 기존 사업 내에서 시비만 증액하는 것인바, 도비가 확정될 때까지는 매칭 비율을 넘는 시비를 부담하게 됨.
-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택시 지원)] 1억 6,000만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재원과 사유가 다르나 구조는 같음. 설명자료는 이용률 증가와 3개 마을 확대에 따른 소요를 “국비 추가 지원 계획이 없어 자체재원으로 편성”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 사업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억원이 국비 50%·시비 50%로 편성된 바 있음.
- 이 밖에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대성동 마을회관)] 7억 1,300만원은 국·도비 5억 6,300만원이 가내시 상태로, 확정 내시가 아닌 재원을 전제로 한 계상임.
- 이상을 종합하여 다음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상급기관 내시가 연간 소요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분이 발생한 사업의 전체 목록과 그 규모(이번 회차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 포함)
 - 사업별 당초 내시액과 변경 내시액 및 그 통보 시기(당초부터 9개월분을 내시한 것인지, 변경 내시로 감액된 것인지)

※3) 경기도 ‘장애인 교통 지원’ 예산 미확보, 확정편 중단 위기(경인일보, 2026. 8. 25.)

- 시비 100%로 대체 부담한 7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가 추후 교부될 경우의 정산·처리 방식
-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의 도비 내시 확정 시기와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액, 도비가 계상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① 시비로 대체 부담할 것인지 ② 운행 규모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및 의결 전까지의 운영 재원 조달 방식
-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도의 추가경정예산 일정과 도비 반영 예정액
-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택시 지원)]의 국비 지원 중단 사유와 향후 지원 계획
-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대성동 마을회관)]의 가내시가 확정 내시로 이어지지 아니할 경우의 조치 계획
-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것인지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Ⅱ-13) '예정된 공정'에 따른 증액의 회차별 반복

<현황>

- [(가칭)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 65억 1,200만원으로 출발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70억 1,600만원, 이번 회차에 33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됨. 두 차례에 걸쳐 103억 6,600만원이 더해지는 것으로 본예산의 1.5배에 해당함.

[2026년도 회차별 계상 추이]

(단위 : 백만원)

본예산(A)	제1·2회 추경 증액(B)	제3회 추경 증액	제3회 추경 후
6,512	7,016	3,350	16,878

- 이번 증액 33억 5,000만원은 공사비 30억원(총공사비 330억원의 9%)과 감리비 3억 5,000만원(총감리비 22억원의 16%)임. 두 차례의 증액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예정된 건축 공정에 따른 사업비 추가”, 이번 회차가 “건축 공정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편성(철골공사, 골조공사)”으로 사실상 같은 사유임.

[최근 3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	2,071	164	8.0	1,906	-
2025	3,406	1,724	50.6	1,364	316
2026	14,893	3,392	22.8	-	-

주) 2026회계연도는 2026. 7. 31. 기준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6,4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임.

<검토의견>

- 사전절차는 재정지출 사전협의 · 중기지방재정계획 · 투자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모두 이행 · 반영되어 있어 절차상 문제는 확인되지 아니함.
- 다만 “예정된 공정”에 따른 증액이 회차를 달리하여 반복되고 있고 그 규모가 본예산의 1.5배에 이르는바, 공정 계획이 본예산 편성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면 그 소요가 당초 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2026년 7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22.8%에 그치는 상태에서 33억 5,000만원을 더하는 것이므로, 잔여 5개월간 집행하여야 할 금액이 148억 5,000만원에 이룸. 1~7월 월평균 집행액이 4억 8,400만원인 데 비해 8~12월 월평균 소요는 29억 7,000만원으로 6.1배 수준인바, 다음 사항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 철골 · 골조공사의 공정 계획과 기성 지급 예정 시기
 - 증액분의 연내 집행 예정액과 이월 예상 규모
 - 준공 예정 시기 및 총사업비 대비 누적 집행 현황
- 특히 증액분의 산정이 ‘총공사비의 9%’ · ‘총감리비의 16%’라는 비율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실제 공정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그 산정 근거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Ⅱ-14) 연간 소요에 미달하는 본예산 편성

<현황>

- 증액 5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편성액이 매년 사실상 전액 집행되어 온 계속사업 2건이 이번 회차에 증액되었는데, 두 사업 모두 2026년도 본예산 계상액이 전년도 집행액보다 적음.

[본예산 계상액과 전년도 집행액 대비]

(단위 : 백만원, %)

사 업	재 원	2025년 집행액	2026년		
			본예산	제3회 추경 증액	집행률(7.31.)
시내버스 직행좌석 운송사업	시100	2,342	1,800	660	67.8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50·시50	3,122	2,482	918	57.4

- [시내버스 직행좌석 운송사업]은 구도심(문산·적성·월릉/법원·연풍·광탄)과 GTX운정중앙역을 잇는 직행좌석버스의 운송원가 손실분을 지원하는 전액 시비 사업임. 2025년 신설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집행률은 96.8%임. 이번 회차 증액사유는 “2026년 집행 예상액(월평균 205,000천원)을 반영한 증액 편성” 인바, 월 2억 5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연간 소요는 24억 6,000만원이고 본예산 18억원은 약 8.8개월분에 해당함. 이 사업은 2025회계연도에도 본예산 15억원에 9억 2,000만원이 증액된 바 있음.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증액분 9억 1,800만원도 도비·시비 각 4억 5,900만원임. 최근 3개 연도 본예산 계상액은 30억 2,300만원·27억 7,000만원·28억 1,000만원인 반면 집행액은 27억 8,600만원·29억 4,500만원·31억 2,200만원으로 본예산은 줄고 집행액은 늘어나는 방향을 보이고 있음. 최근 3개연도 집행률은 각각 97.5%·99.2%·99.9%임. 이번 회차 증액사유는 “올해 초·중·고 6개 학교(급식인원 1,706명)가 개교하여 급식 인원 증가 및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급식 소요 예산 증가분을 반영” 임.

<검토의견>

- [시내버스 직행좌석 운송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므로 계상 규모를 시가 스스로 정한 것임. 설명자료가 증감사유에 월평균 소요액을 제시하고 있어 그 값으로 연간 소요가 곧바로 산정되는데도 본예산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2년 연속 같은 방식으로 하반기에 메워지고 있음. 다만 2026년 7월 31일까지의 실제 집행액은 12억 2,100만원으로 월평균 1억 7,400만원인바 설명자료가 제시한 월평균 2억 500만원과 차이가 있음.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인 만큼 본예산 계상액이 낮은 것이 경기도의 내시 규모에 따른 것인지, 시의 자체 추계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짐. 다른 매칭사업들이 증감사유에 내시 경과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업은 개교와 물가상승만을 들고 있고 6개 학교의 개교는 본예산 편성 시점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상액의 산정 근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도비 내시 규모에 따른 것이라면 검토의견 II-12와 같은 유형에 해당함.
- 두 사업 모두 편성액이 전액 집행되어 온 사업이므로 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우리 위원회가 주문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거쳐 본예산에 편성” (제255회 2025년도 제2회 추경) 원칙에 비추어 연간 소요가 확정적인 사업은 본예산에 그 전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바, 다음 사항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두 사업의 2026년도 본예산 계상액 산정 기준과 그 근거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의 본예산 편성 당시 도비 내시 규모와 계상액의 관계
 -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소요 전액을 계상할 것인지 여부

Ⅲ. 특별회계 예산안

1. 특별회계 총괄

- 2026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06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3,200만원(1.6%) 증가하였는바, 기타특별회계 12억 1,500만원(1.5%), 공기업특별회계 52억 1,700만원(1.6%)이 각각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증액은 전체 증액(1,357억 5,900만원)의 4.7%에 그쳐 이번 회차의 증액이 일반회계에 집중되어 있음.

[특별회계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 계	기정예산(A)	제3회 추정(안)(B)	증감(B-A)	증감률
계	399,865	406,297	6,432	1.6
기타특별회계	80,564	81,779	1,215	1.5
공기업특별회계	319,301	324,518	5,217	1.6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서가 별책으로 작성되므로, 제출본 예산안 본책의 세입총괄표·세출총괄표·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을 범위로 함.
-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은 「세입·세출」이 아니라 수익적 수입·지출(사업예산)과 자본적 수입·지출(자본예산)로 편제되므로, 이하 「3.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입예산·지출예산의 용어를 사용함.

2. 기타특별회계

가. 기타특별회계 총괄

- 7개 기타특별회계 중 증감이 발생한 회계는 의료급여·교통사업·주차장관리 3개이며, 나머지 4개 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공영개발사업·폐수처리사업·폐기물처리시설)는 기정예산이 그대로 유지되었음.
- 의료급여 6억 8,800만원(9.0%), 교통사업 5억 9,800만원(12.9%)이 각각 증액되고, 주차장관리는 7,200만원(△0.9%) 감액되었음.
 - 규모가 가장 큰 폐수처리사업(596억 6,700만원, 기정예산 기준 기타특별회계의 74.0%)은 증감이 없음.

[기타특별회계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 계	기정예산(A)	제3회 추정(안)(B)	증감(B-A)	증감률
계	80,564	81,779	1,215	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49	1,149	-	-
의료급여	7,584	8,273	688	9.0
교통사업	4,619	5,218	598	12.9
주차장관리	7,540	7,468	△72	△0.9
공영개발사업	2	2	-	-
폐수처리사업	59,667	59,667	-	-
폐기물처리시설	0	0	-	-

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47천원으로 백만원 미만이어서 0으로 표기함.

나. 기타특별회계 세입

-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원 구조가 회계마다 상이함.
 - 의료급여는 국·도비 보조금 2억 6,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000만원이 함께 증액되어, 의존재원과 내부거래가 병행 확대되는 구조임.
 - 교통사업은 도비보조금 1억 5,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차장관리는 순세계잉여금 8억 9,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9억 6,200만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7,200만원이 감소하였음. 즉 잉여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체한 편성임.
- 3개 회계의 전입금 증감을 합산하면 $320 + 282 - 962 = \Delta 360$ 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기타회계등전출금’의 증감($\Delta 360$ 백만원)과 일치함.

[기타특별회계 세입 증감]

(단위 : 백만원)

과목	의료급여			교통사업			주차장관리		
	기정	3회추경	증감	기정	3회추경	증감	기정	3회추경	증감
계	7,584	8,273	688	4,619	5,218	598	7,540	7,468	$\Delta 72$
200 세외수입	52	52	-	1,575	1,575	-	4,905	4,905	-
500 보조금	1,318	1,588	269	932	1,087	155	-	-	-
511 국고보조금등	1,121	1,351	229	-	-	-	-	-	-
521 시·도비보조금등	196	236	40	932	1,087	155	-	-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14	6,632	418	2,111	2,555	443	2,634	2,562	$\Delta 72$
711 잉여금	21	120	98	100	260	160	1,000	1,890	890
721 전입금	6,192	6,512	320	2,011	2,294	282	1,634	671	$\Delta 962$

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의료급여는 증액분의 82.2%가 의료급여 급여비 소요 보전(현금급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매칭)이며,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임.
 - 교통사업은 증액분 전액이 교통신호·교통안전 등 시설비 계열과 반환금, 신규 사업비로 구성됨.
 - 주차장관리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의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3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공영주차장 조성]·[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으로 재배분하는 구조임.
- 한편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중 가장 큰 규모임에도 이번 회차에 증감이 없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확인된 대규모 집행잔액에 대응하는 조정도 확인되지 아니함(검토의견 III-1 참조).

[기타특별회계 세출 증감]

(단위 : 백만원)

회계 / 세부사업	기정예산(A)	제3회 추정(안)(B)	증감(B-A)
의료급여 계	7,584	8,273	688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1,289	1,574	285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매칭)	6,182	6,463	280
보전지출(반환금기타)	-	120	120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88	89	1
교통사업 계	4,619	5,218	598
교통신호시설 관리	2,003	2,258	255
교통안전시설 관리	545	714	169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신규)	-	150	150
보전지출(반환금기타)	-	19	1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신규)	-	5	5
주차장관리 계	7,540	7,468	△72
공영주차장 조성	217	350	133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542	616	74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769	3,805	35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965	650	△315

주) 회계별 증감 있는 세부사업만 표기함.

3. 공기업특별회계

가.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245억 1,800만원으로, 기정 3,193억 100만원보다 52억 1,700만원(1.6%)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36억 7,700만원(2.6%), 하수도사업이 15억 4,000만원(0.8%) 각각 증액되었음.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 계	기정예산(A)	제3회 추경(안)(B)	증감(B-A)	증감률
계	319,301	324,518	5,217	1.6
상수도사업	139,680	143,357	3,677	2.6
하수도사업	179,621	181,161	1,540	0.8

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기정 대비 36억 7,700만원 증가한 1,433억 5,700만원임.
- 이번 회차 증액 전액이 사업예산의 영업외수익(679-009 기타영업외수입)으로 계상된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생수구입비 보상금’이며, 근거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경영처-1246호(2026. 4. 16.) 보상금 결정 통보임. 영업수익과 자본예산 수입은 증감이 없음.

[상수도사업 수입예산 증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A)	제3회 추경(안)(B)	증감(B-A)
합 계	139,680	143,357	3,677
사업예산 수입계	63,713	67,390	3,677
영업수익	58,743	58,743	-
영업외수익	4,969	8,646	3,677
기타영업외수입	190	3,867	3,677
자본예산 수입계	75,967	75,967	-

주1) 「지방공기업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사업예산(수익적 수입·지출)과 자본예산(자본적 수입·지출)으로 구성되며, 이하 두 회계의 표에 같은 구분을 적용함.

주2) 수입 표의 들여쓰기 1단은 관(款), 2단은 목(目)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 사업예산의 배·급수관리운영(301-12 기타보상금)이 37억 1,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원은 기타(한국수자원공사) 36억 7,700만원과 시비 3,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시비는 타지역 전출자 및 정액보상금 초과분임(사업별 설명자료).
- 시비 소요는 자본예산의 ‘시설투자적립금’ 7,100만원을 감액하여 조달하는 구조임.

[상수도사업 지출예산 증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A)	제3회 추경(안)(B)	증감(B-A)
합 계	139,680	143,357	3,677
사업예산 지출계	59,504	63,253	3,748
상수도사업(수익적)	57,186	60,899	3,713
배·급수 관리운영	1,131	4,844	3,713
재무활동	-	35	35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신규)	-	35	35
자본예산 지출계	80,175	80,104	△71
재무활동	60,198	60,126	△71
기타자본적지출(시설투자적립금)	60,198	60,126	△71

주1) 구분 란의 들여쓰기 1단은 정책사업, 2단은 세부사업임.

주2)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사업예산(보조금 반환)과 자본예산(적립금)에 각각 편제되어 있음.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 개요]

항 목	내 용
사 고 명	2025. 11. 14.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금액	가구당 21,630원(1일 7,210원 × 3일), 17만 세대
대상지역	운정16동 · 금촌12동 · 교하동 전체(금촌3동 · 조리읍 · 월릉면 일부 제외)
보상재원	정액보상금은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타지역 전출자 및 정액보상금 초과분은 파주시 부담
추진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자동차감), 2026년 8월분 요금 고지분부터 차감
추진현황	2026. 5.~6. 의회 사전보고 및 수입금 마련 지출(성립전) 예산편성, 2026. 8. 3.~ 보상 실시

※ 근거 : 사업별 설명자료

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기정 대비 15억 4,000만원 증가한 1,811억 6,100만원임.
- 증액 전액이 자본적수입의 기타자본적수입(191-09)이며, 사유는 “분수 및 적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에 따른 수입 증가” 로 한국환경공단이 위 · 수탁 설계용역 사업비를 파주시에 반납한 데 따른 것임.

[하수도사업 수입예산 증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A)	제3회 추경(안)(B)	증감(B-A)
합 계	179,621	181,161	1,540
사업예산 수입계	51,342	51,342	-
자본예산 수입계	128,279	129,819	1,540
기타자본적수입	1	1,541	1,540

주) 들여쓰기 1단은 목(目)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 하수관로 사업 11억 1,500만원, 하수도 정비 및 건설(국고보조사업) 27억 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사업비가 38억 6,000만원 순증하였음.
 - 그 재원은 수입 증가 15억 4,000만원과 ‘시설투자적립금’ 감액 23억 2,100만원으로 조달되는 구조임.

[하수도사업 지출예산 증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A)	제3회 추정(안)(B)	증감(B-A)
합 계	179,621	181,161	1,540
사업예산 지출계	54,609	54,609	-
자본예산 지출계	125,011	126,551	1,540
하수관로 사업	6,272	7,388	1,115
하수도사업 토지보상	320	350	30
적성(두지·구읍) 하수관로 정비	2,050	3,136	1,085
하수도 정비 및 건설(국고보조사업)	48,366	51,111	2,745
분수 하수관로 정비	13,809	14,741	931
영장리 하수관로 정비(신규)	-	600	600
백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802	3,017	1,214
재무활동	54,272	51,950	△2,321
기타자본적지출(시설투자적립금)	40,938	38,617	△2,321

주) 구분 란의 들여쓰기 1단은 정책사업, 2단은 세부사업임.

[하수도사업 사업별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사업	증감	사 유
하수도사업 토지보상	30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 산정액 및 등기수수료 등 제반비용 반영
적성(두지·구읍) 하수관로 정비	1,085	공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 노선 시공에 필요한 잔여 공사비 및 용역비를 반영. ※ 추가 노선: 오수관로(D200, L=886m)
분수 하수관로 정비	931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에 따라 시행한 ‘분수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사업비를 반납(2026. 5. 19.)함에 따라 부족한 공사비 및 감리비를 확보(시설비 278, 감리비 652)
영장리 하수관로 정비	600	‘영장리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613백만원을 기투자. 2026년 설계용역 완료를 위해 부족분 600백만원(설계비 450, 위·수탁 수수료 150) 확보 필요
백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214	2026년 2차 내역조정으로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편성(국비 1,000, 도비 214)

【검토의견 - 특별회계】

(Ⅲ-1)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반환금 계상

<현황>

- 의료급여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번 회차에 [보전지출(반환금기타)]을 각각 1억 2,000만원 · 1,900만원 신규 계상하고 그 재원으로 잉여금(711)을 각각 9,800만원 · 1억 6,000만원 세입에 증액하였음.
- 이는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분으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임.
- 반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026년도 예산에 보조금 세입이 계상되지 아니하여 이번 회차에 반환금 계상이 없으나, 이번 회차에 잉여금(711) 8억 9,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9억 6,200만원 감액하여 세입 총액이 7,200만원 감소하였음.
- 즉 3개 회계 모두 이번 회차에 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의료급여·교통사업은 반납 소요에 대응하는 재원 계상인 반면 주차장관리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체하는 재원 계상이어서 그 성격이 서로 다른데, 3개 회계의 세출 반환금 계상액과 세입 잉여금 증액을 대조하면 재원과 소요의 대응 관계가 회계별로 일치하지 아니함.

[기타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 계상과 잉여금 증액 대조]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출 반환금 계상(A)	세입 잉여금 증액(B)	차액(B-A)
의료급여	120	98	△21
교통사업	19	160	141
주차장관리	-	890	890

주)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026년도 예산에 500 보조금이 계상되지 아니하여 이번 회차에 반환금 계상이 없음.

- 위 3개 회계가 계상한 잉여금은 모두 순세계잉여금(711-01)으로서 2025회계연도 결산으로 확정된 금액인바, 이번 회차에 증감이 없는 회계를 포함하여 7개 기타특별회계 전체의 결산 확정액은 116억 3,400만원이고 이번 회차 포함 2026년도 누적 계상액은 72억 5,500만원임.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 확정액과 계상액 대조]

(단위 : 백만원)

회 계	결산 확정액(A)	제3회 추경 후 계상액(B)	미계상액(A-B)
계	11,634	7,255	4,37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1	-	131
의료급여	120	120	-
교통사업	260	260	-
주차장관리	1,890	1,890	-
공영개발사업	0	2	△1
폐수처리사업	9,230	4,980	4,249
폐기물처리시설	0	0	-

주) 공영개발사업의 확정액은 653천원, 폐기물처리시설은 확정액 345천원·계상액 345천원으로 모두 백만원 미만임. 공영개발사업은 계상액(2,532천원)이 확정액을 1,879천원 초과함.

<검토의견>

- 일반회계의 경우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재원을 전년도이월금(712)에 별도 계상한 반면(검토의견 II-5 참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과목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잉여금(711)에 통합 계상하고 있어 반납 소요와 재원의 대응 관계가 예산서상 드러나지 아니함.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입 과목 구분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712-01)을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712-02)을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시·도에 반납 예정인 금액”으로 각각 정하고 있고, 지정재원 잉여금(711-02)은 지난연도에 교부된 지정재원 중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분하고 있음.

- 즉 같은 전년도 보조금 재원이라도 반납 예정액은 전년도이월금(712)에, 재편성액은 잉여금(711)에 계상하도록 과목이 나뉘어 있는 것인바, 반납 재원을 잉여금(711)에 통합 계상하는 것은 과목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회계별 반납 확정액과 순세계잉여금을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재원은 기타특별회계에서도 전년도이월금(712)에 별도 계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결산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계상하면서 그 규모를 초과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여 회계 간 재원 대체의 성격을 가지는 편성인바, 전입금 감액 폭의 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순세계잉여금을 적극적으로 세입에 계상할 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주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바(검토의견 II-1 참조), 결산으로 확정된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43억 7,900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미계상액이 42억 4,900만원으로 해당 회계 확정액의 46.0%에 이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확정액 1억 3,100만원이 전액 미계상 상태임.

(Ⅲ-2)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실적의 예산 미반영

<현황>

- 두 공기업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익 모두 2026년도 본예산 계상액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아니하였음(3차례 추정 모두 증감 0).
-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실적과 대조하면 두 회계가 어긋나며, 그 방향도 서로 반대임.

[결산 실적과 2026년도 계상액 대조]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5회계연도 결산 실적(A)	2026년도 제3회 추정 후 계상액(B)	차액(B-A)	계상률(B/A)
순세계잉여금	상수도사업	109,860	70,000	△39,860	63.7
	하수도사업	75,497	80,013	4,515	105.9
이자수익	상수도사업	2,739	2,000	△739	73.0
	하수도사업	905	5,100	4,194	563.1

주1) 순세계잉여금 A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B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상 유보자금 중 ‘잉여금’ 입 (미수금 제외). ※통합결산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상 금액은 상수도사업 1,098억 6,600만원, 하수도사업 754억 9,300만원으로 차이가 있음.

주2) 이자수익 A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예산결산상 채무확정, B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사업예산 수입 ‘671 이자 수’ 입(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은 상수도사업 24억 7,100만원, 하수도사업 27억 3,700만원이며 그 차액은 미수이자에 결 산정리에 따른 것임).

- 2026년도 본예산은 2025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되기 전에 편성된 것이므로 계상액이 추정치인 것은 불가피하나, 출납폐쇄 이후 편성된 제1·2·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이와 비교해 일반회계는 이번 회차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617억 7,400만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3개 회계도 결산 확정에 따라 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였음(검토의견 Ⅱ-1·Ⅲ-1 참조).
- 한편 두 회계의 2025회계연도 말 보유 자금은 합계 1,974억원(상수도사업 1,116억 8,000만원, 하수도사업 857억 2,000만원)에 이르나, 그 예치 형태와 수익률은 예산서·결산서로 확인되지 아니함.

<검토의견>

-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적극 계상할 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주문은 회계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인바(검토의견 II-1 참조), 상수도사업의 미계상액 398억 6,000만원에 대하여는 계상하지 아니한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반대로 하수도사업은 결산 확정액을 45억 1,500만원 초과하여 계상함으로써 확정된 재원 규모를 넘어서는 세입이 잡혀 있는바, 연내 조정 계획과 함께 초과분이 특정 사업의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자수익도 상수도사업은 실적의 73.0%만, 하수도사업은 563.1%를 계상하여 두 회계 모두 추계가 실적과 크게 어긋나 있음.
상수도사업은 2025년도 실적이 예산의 136.9%에 이르렀음에도 다시 같은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실적 9억 500만원의 5.6배인 51억원을 계상한 것인바, 2025년 말 미수이자 45억 900만원의 만기 도래에 따른 수납 계획을 포함하여 이자수익의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원칙적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주시 통합계정은 2025년 중 순증이 800만원에 그쳐 예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바, 여유자금의 예치 형태·평균잔액·적용금리와 통합계정 예탁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끝으로 출납폐쇄로 확정된 전년도 실적이 그 이후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Ⅲ-3) 하수도사업 전년도 집행부진 사업 증액

<현황>

- 2025회계연도 결산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률이 저조하였던 자본사업은 7건이며, 제3회 추경에서 증액되는 사업 5건 가운데 3건이 이에 해당함.

[전년도 집행부진 사업의 제3회 추경(안) 증액(하수도)]

(단위 : 백만원, %)

사 업	2025년 집행률	2025년 미집행 사유	제3회 추경(안) 증액
적성(두지·구읍) 하수관로 정비	5.2	지장물 간섭·토지사용 협의 지연	1,085
분수 하수관로 정비	45.5	공사 진행(계속비)	931
백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7.1	공사 진행(계속비)	1,214

<검토의견>

- [적성(두지·구읍) 하수관로 정비]는 2024회계연도에서 21억 6,400만원이 이월되었음에도 2025회계연도에 “지장물 간섭 및 토지사용 지연으로 미추진” 되어 1억 1,300만원만 집행되고 20억 5,0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 중 17억 7,400만원은 사고이월분으로서 재이월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임.
- 그러나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의 증감사유는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 노선 시공에 필요한 잔여 공사비 및 용역비 반영(추가 노선: 오수관로 D200 L=886m)” 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2025회계연도 결산상 미집행 사유로 기재된 지장물 간섭·토지사용 협의 문제가 해소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2년 연속 미집행된 사업에 추가 노선을 더하여 10억 8,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므로, 선행 협의의 진척 상황과 연내 착공·준공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백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2억 1,400만원은 2026년 제2차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른 것으로 의존재원의 내시 시기에 따른 불가피한 편성으로 보이나, 동 사업 역시 2025회계연도 집행률이 27.1%에 그친 계속비 사업인 만큼 연내 집행 가능성 확인이 필요해 보임.

(Ⅲ-4) 위·수탁 설계용역의 사업비 반납과 부족분 동시 발생

<현황>

- [분수 하수관로 정비] (9억 3,100만원)와 [영장리 하수관로 정비] (6억원)는 모두 한국환경공단과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시행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된 것임.
- 전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용역 사업비 9억 3,100만원을 반납(2026. 5. 19.)함에 따라 그 금액을 세입 ‘기타자본적수입’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같은 사업의 공사비 2억 7,800만원·감리비 6억 5,200만원으로 재계상하는 것임.
- 후자는 기투자액 6억 1,300만원에 더하여 설계용역 완료를 위한 부족분 6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임.

[위·수탁 설계용역 관련 계상 내역 대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분수 하수관로 정비	영장리 하수관로 정비
기정예산	13,809	-
제3회 추경(안)	14,741	600(신규)
증감	931	600
발생 사유	위·수탁 설계용역 사업비 반납(2026. 5. 19.)에 따른 공사비·감리비 부족	위·수탁 설계용역 완료를 위한 부족분 발생
증액분 구성	시설비 278, 감리비 652	설계비 450, 위·수탁 수수료 150
기투자 설계용역비	-	613
증액 후 설계용역비 계	-	1,213

주) 이번 회차 하수도사업 자본예산 ‘기타자본적수입’에는 정산에 따른 반납금 1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분수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9억 3,100만원, [분수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5억 6,800만원, [과주시 적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4,000만원임. 이 중 이번 회차에 세출로 재계상된 것은 1단계 반납분 9억 3,100만원뿐임.

<검토의견>

- 동일한 위·수탁 구조에서 한쪽은 사업비가 반납되고 다른 쪽은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어, 위·수탁 설계용역의 사업비 산정과 정산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영장리의 경우 기투자 6억 1,300만원에 6억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용역비의 약 2배에 이르는 규모인바, 증액 사유와 위·수탁 수수료 1억 5,000만원의 산정 근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이번 회차에 계상된 반납금 15억 4,000만원 가운데 6억 800만원(분수 2단계 5억 6,800만원, 적성 4,000만원)은 대응하는 세출 계상 없이 수입으로만 반영되어 있는바, 해당 재원의 사용 계획과 잔여 공정에 필요한 소요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Ⅲ-5) 하수도사업 계속비 의결 근거와 조서 편제 불일치

<현황>

- 2025회계연도 결산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분수 하수관로 정비] 32억 300만원과 [백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0억 9,400만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되었음.
- 그러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회차별로 확인한 결과 2025회계연도 예산서에는 예산총칙과 계속비 사업 조서 어디에도 계속비가 편제된 사실이 없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서 처음으로 조서에 8개 사업이 등재되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편제 현황]

예산서		예산총칙 제5조(계속비)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
2025년도	본예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2회 추경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3회 추경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4회 추경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26년도	본예산	해당 없음	8개 사업 등재
	제1회 추경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3회 추경(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하수도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

- 2026년도 본예산 조서에 등재된 8개 사업의 계속비승인 총사업비는 2,322억 1,900만원, 2026년 연부액 합계는 165억 4,600만원이며, 이번 회차에 증액되는 [분수 하수관로 정비]와 [백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도 여기에 포함됨.

[2026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등재 사업(하수도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기간	계속비승인 총사업비	2026년 연부액
계		232,219	16,546
분수 하수관로 정비	2020~2028년	37,039	13,810
운정·탄현 하수관로 정비	2025~2029년	23,902	400
야당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2026~2030년	44,379	833
백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2021~2028년	11,786	1,374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023~2028년	15,163	128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023~2028년	39,434	-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	2021~2028년	46,280	-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025~2029년	14,236	-

[계속비 사업의 2026년 연부액 변경]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본예산 조서상 연부액	기정예산	제3회 추경(안)	증감
분수 하수관로 정비	13,810	13,809	14,741	931
백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374	1,802	3,017	1,214

주) 백연리의 기정예산은 조서상 연부액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428백만원이 더해진 것임.

<검토의견>

-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이 우선 적용되나, 같은 법에는 계속비의 설정과 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제30조제4항이 계속비 제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같은 법 제6조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고 정한 데 따라, 계속비의 설정·연한·연장에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42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같은 조 제1항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연한을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의결은 예산총칙과 계속비 사업 조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
- 그럼에도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예산서에는 본예산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까지 계속비가 한 차례도 편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산에서는 위의 두 사업 43억원이 계속비이월로 처리되었는바, 계속비로 의결받은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함.
- 2026년도 본예산은 계속비 사업 조서에 8개 사업 2,322억 1,900만원을 등재하면서도 같은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5조는 “해당 없음”으로 두어 서로 어긋나 있음. 예산총칙은 그 자체가 의결 대상이므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조서가 다시 편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비 사업 2건의 연부액이 21억 4,500만원 변경되고 있으며, [백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조서 없이 4억 2,800만원이 변경된 바 있음.
- 일반회계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문제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바, 조서 없이 연부액만 변경되는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검토의견 II-10 참조).

- 이에 ① 두 사업이 계속비로 의결된 시점과 근거, ② 2025회계연도 예산서에 계속비가 편제되지 아니한 경위, ③ 2026년도 본예산의 예산총칙과 조서가 서로 다른 사유, ④ 조서상 사업기간이 6년~9년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의 5년 연한을 초과하는 5개 사업([분수 하수관로 정비] 2020~2028년, [백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 2021~2028년,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023~2028년)의 연한 연장 의결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IV. 예산총칙안

-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은 예산을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의 총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예산총칙에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출된 예산총칙안은 5개 조로 구성되며, 기정 예산총칙(제2회 추정) 대비 변경 사항은 제1조(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뿐이고 제2조~제5조는 동일함.

1. 제1조 -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

- 일시차입한도액은 기정 741억 8,100만원에서 782억 5,400만원으로 40억 7,300만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예산총액 증가에 따라 동일한 산정률(예산총액의 100분의 3)이 적용된 결과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08,487	78,254
일반회계	2,202,190	66,065
특별회계	406,297	12,188
기타특별회계	81,779	2,453
공기업특별회계	324,518	9,735

2. 제3조 - 예비비

-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원(일반예비비 5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이번 회차 증감이 없음.
 -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은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3회 추경 후 일반회계 예산총액 2조 2,021억 9,000만원 대비 예비비 100억원은 0.4%로 한도 내이며, 일반예비비만으로는 0.2% 수준임.
- 기타특별회계는 같은 항 후단의 임의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에만 4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225억원으로 이번 회차에 증감이 없으며, 일반예비비 25억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계	예산총액 대비
계	2,500	20,000	22,500	-
상수도사업	1,000	10,000	11,000	7.6
하수도사업	1,500	10,000	11,500	6.3

주1) 일반예비비는 사업예산 예비비와 자본예산 예비비 가운데 통계목 '801-01 일반예비비'의 합계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임.

주2) 「202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하면서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일반예비비 기준 한도는 상수도사업 14억 3,300만원, 하수도사업 18억 1,100만원임.

3. 제4조 - 지방채 발행 한도액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70억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이래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제3회 추경 후 세입예산에는 지방채 수입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

4. 제5조 - 예산의 이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은 정책사업 간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서에서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예산총칙안 제5조는 이에 근거하여 ①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②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를 이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정예산과 동일함.

V. 참고자료

1. 회차별 예산 규모 추이

- 최근 2개 연도의 회차별 총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 2025회계연도는 제3회 추경까지 본예산 대비 20.8%가 증액되었고 제4회 추경을 포함하면 24.9%였던 반면, 2026회계연도는 제3회 추경(안) 기준 10.5%로 증액 폭이 절반 수준임.
 - 2025회계연도는 제3회 추경에서만 12.8%(2,965억 5,000만원)가 증액되어 회차별 편중이 컸음.

[최근 2개 연도 회차별 총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구 분	예산 총규모	직전 회차 대비 증감	증감률	본예산 대비 누적 증감	누적 증감률
2025	본예산	2,152,754	-	-	-	-
	제1회 추경	2,204,747	51,993	2.4	51,993	2.4
	제2회 추경	2,304,985	100,237	4.5	152,231	7.0
	제3회 추경	2,601,535	296,550	12.8	448,781	20.8
	제4회 추경	2,689,652	88,116	3.3	536,898	24.9
2026	본예산	2,359,960	-	-	-	-
	제1회 추경	2,420,207	60,246	2.5	60,246	2.5
	제2회 추경	2,472,728	52,521	2.1	112,768	4.7
	제3회 추경(안)	2,608,487	135,759	5.4	248,527	10.5

- 연도별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액을 살펴보면,
 - 직전 2개 연도의 증액률은 2024회계연도 16.4% · 2025회계연도 26.0%임.
 - 2026회계연도는 제3회 추경(안) 기준 12.2%로 아직 예년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연도별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액(2024~2026)]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본예산(A)	최종예산액(B)	증감(B-A)	증감률
2024	1,669,993	1,944,973	274,980	16.4
2025	1,774,080	2,236,121	462,041	26.0
2026	1,962,648	2,202,190	239,542	12.2

주) 2026년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이므로 확정치가 아님.

2. 상임위원회별 증감 현황

○ 상임위원회별 증감을 살펴보면,

-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 728억 1,100만원(18.9%) 증액되어 전체 증액의 55.8%를 차지함.
- 자치행정위원회 429억 9,000만원(증감 3.1%, 구성비 32.9%), 문화환경위원회 147억 200만원(3.7%, 11.3%), 운영위원회 3,600만원(1.5%, 0.0%) 순임.
- 증액이 도시산업위원회에 집중된 것은 시설비및부대비 480억 1,200만원(일반회계 증액의 37.1%)이 도로·산업단지 등 도시산업 분야에 편중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검토의견 II-6 참조).

[상임위원회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상임위원회	기정예산(A)	제3회 추경(안)(B)	증감(B-A)	증감률
계	2,153,427	2,283,969	130,541	6.0
도시산업위원회	384,307	457,119	72,811	18.9
자치행정위원회	1,372,574	1,415,565	42,990	3.1
문화환경위원회	394,110	408,813	14,702	3.7
운영위원회	2,434	2,471	36	1.5

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함.

3. 예산·결산 심사 지적·주문사항과 제3회 추경 반영 대조

- 최근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제기한 지적·주문사항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직접 관련되는 것을 추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반영 상황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음.
- 결산 심사 주문사항 12건(제247회·제257회)과 예산안 심사 주문사항 6건(제251회·제255회·제260회·제262회·제263회)을 합하여 18건임.

[예산·결산 심사 지적·주문사항과 제3회 추경 반영 대조]

회차	지적·주문 요지	제3회 추경(안) 반영 상황	관련 검토의견
제247회(2023결산) 회의록	잉여금의 적정 수준 선정 및 적절한 사용	순세계잉여금 91.7% 계상, 미계상 198억 4,300만원	(Ⅱ-1)
제257회(2024결산) 회의록	순세계잉여금 처리 방향(기금 전환 등) 검토	기금 전환 없이 세입 계상	(Ⅱ-1)
제247회(2023결산) 회의록	추경 시 세수 재추계 반영	지방세 3개 회차 연속 무변동	(Ⅱ-3)
제257회(2024결산) 회의록	세외수입 미편성 수납 과목의 예산 반영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세입목 미편성	(Ⅱ-2)
제257회(2024결산) 회의록	추경 증액분의 실제 집행 가능성 검증·명시이월 관행 지양	시설비 신규사업 42건·자체재원 68.9%, 이번 회차 최초 계상 36건 140억 6,600만원	(Ⅱ-6)
제247회·제257회 회의록	관행적 명시이월 지양	전년도 집행부진 사업 9건에 144억 2,800만원 재증액	(Ⅱ-9)
제247회(2023결산) 회의록	성립전예산 사용 자중	일반회계 성립전 편성 41개 사업 108억 8,200만원(특별교부세 재원 6건 포함), 상수도 보상금 성립전 편성	(Ⅱ-8)
제247회(2023결산) 회의록	사업 축소·취소 시 추경 감액 활용	감액 실·국 1개(문산도서관 △1억 6,600만원)	-
제257회(2024결산) 회의록	국·도비 반납률 축소	반환금기타 143억 7,700만원 계상	(Ⅱ-5)
제247회(2023결산) 회의록	다년도사업의 계속비 편성	계속비 조서 미편제 상태에서 연부액 72억 8,400만원 변경	(Ⅱ-10)
제257회(2024결산) 회의록	[과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안정적 집행·공정 관리	준공 시기 재연장(2028년 → 2029년), 2026. 7. 31. 기준 집행률 0.1%	(Ⅱ-10) (Ⅱ-11)
제247회(2023결산) 회의록	예비비 구분 편성 및 과다 편성 지양	일반회계 예비비 변동 없음, 공기업특별회계 225억원 유지	-

[예산·결산 심사 지적·주문사항과 제3회 추경 반영 대조]

회차	지적·주문 요지	제3회 추경(안) 반영 상황	관련 검토의견
제251회(2025 본예산) 주문사항 【재정경제실】 16	[전통시장 경영지원]에 대해 “편성된 예산의 10~30%가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데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 -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	집행률 30% 미만 사업 9건에 144억 2,800만원 증액	(Ⅱ -6) (Ⅱ -9)
제255회(2025 2추) 주문사항 【공통사항】 1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거쳐 본예산에 편성할 것	이번 회차 최초 계상 시설사업 36건 140억 6,600만원	(Ⅱ -6)
제260회(2026 본예산) 회의록	[과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2022~2029년 장기사업에 대한 연도별 추진 경과·공정률·집행 세부내역 제출 요구	계속비 사업조서 미편제 상태에서 연부액 63억 1,400만원 증액	(Ⅱ -10) (Ⅱ -11)
제262회(2026 1추) 회의록 및 주문사항 【예산재정실】 1	지방교부세 감액 요인의 사전적 관리체계 구축(산정지표 연중 관리·전담 TF), 집행률 저조 사업 구조조정	제3회 추경 보통교부세 156억원 증액, 관리체계 구축 여부 미확인, 집행부진 사업 9건 재증액	(Ⅱ -4) (Ⅱ -9)
제262회(2026 1추) 회의록 및 주문사항 【행정안전국】 8	사업기간 및 예산편성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점검, 사업기간을 부서 임의대로 정하는 편성 지양, 담당부서·예산부서 협의	사업기간·사업량이 회차마다 변동되는 계속비 사업 확인됨	(Ⅱ -10) (Ⅱ -11)
제263회(2026 2추) 회의록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집행 중인 상태에서 의결(지급률 95% 초과)	제3회 추경에도 성립전 편성 41개 사업 108억 8,200만원 포함	(Ⅱ -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I. 개요

1. 제안 경위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2026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이 의안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 본문의 기한을 지나 제출되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2026. 8. 26.)을 거쳐 심사에 부쳐진 것임.

Ⅱ. 주요 내용

1. 기금 총괄

- 이번 변경안에서 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개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변경 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5년말 조성액(A)	수입(B)	지출(C)	증 감 (B-C)	2026년말 조성액 (A+B-C)
합 계	202,009	11,770	14,961	△3,191	198,8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37,926	882	4,539	△3,656	34,26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36,986	747	-	747	37,734
식품진흥기금	422	158	256	△97	325
고향사랑기금	284	456	51	405	690
남북교류협력기금	3,829	86	287	△201	3,628
재난관리기금	13,175	4,547	2,747	1,800	14,975
자활기금	2,115	53	40	13	2,129
노인복지기금	2,082	47	317	△269	1,813
성평등기금	1,032	23	233	△209	822
체육진흥기금	5,224	125	1,663	△1,538	3,685
청사건립기금	71,835	1,939	-	1,939	73,7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1,198	931	3,020	△2,088	19,109
옥외광고발전기금	511	203	159	43	555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893	1,435	1,567	△131	1,762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489	131	78	53	3,543

주1) 이 표는 전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백만원 단위로 표기함(백만원 미만 절사). 남북교류협력기금 외의 기금은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서」(본예산)의 ‘3. 기금조성규모’ 기준임.

주2) 수입(A)·지출(C)는 기금 내부거래인 예치금·예탁금의 회수와 예치·예탁을 제외한 금액임.

2. 남북교류협력기금

가. 기금 개요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2004년에 설치된 기금임.

[남북교류협력기금 개요]

구 분	내 용
설치 근거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24. 4. 2. 시행) 제21조
설치 목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
설치 연도	2004년
소관 부서	자치협력과(평화협력팀)
구성 재원	①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② 기금의 운용수익금 ③ 그 밖의 수입금(제22조제1항) ※ 시장은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
사업 범위	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과의 교류협력사업으로서 ① 문화·학술·역사·체육·관광·경제 등에 관한 사업 ② 인도주의적인 분야 등에 관한 사업. 이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을 포함(제20조제1항)
용 도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③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④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회의·학술연구 및 행사에 관한 사업 ⑤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제24조)
지원 대상	조례 제2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시행규칙 제3조)
관리·운용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제25조제1항)
심의 기구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존속 기한	2026년 12월 31일(제23조)
2025년도 말 조성액	38억 2,988만원

- 전입금은 2021년도 이후 계상된 바 없고, 조성 재원은 이자수입에 그치고 있음. 2025년도 말 기금 38억 2,988만원의 예치·예탁 내역은 시금고 예치금 28억 1,988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10억 1,000만원이며, 예탁금은 2024년도 말 이후 3개 연도가 같은 금액임.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단위 : 천원)

연 도	조성액	전입금	이자수입 등	집행액	연도말 조성액
2020년까지	4,518,963	4,100,000	418,963	307,322	4,211,641
2021	44,869	-	44,869	152,237	4,104,273
2022	33,805	-	33,805	132,644	4,005,434
2023	72,006	-	72,006	211,842	3,865,598
2024	122,267	-	122,267	175,172	3,812,693
2025	121,717	-	121,717	104,521	3,829,889
2026(변경 후)	86,072	-	86,072	287,680	3,628,281

나. 변경 내용

- 이번 운용계획 변경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2026년 DMZ OPEN 전시」에 파주시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고자 예치금을 재원으로 분담금을 계상하는 것이며, 그 밖의 사업은 증감이 없음.

[기금운용계획 항목별 증감]

(단위 : 천원)

항 목	기정계획(A)	변경계획(B)	증 감(B-A)
수입	2,899,498	2,905,961	6,463
예치금회수	2,813,426	2,819,889	6,463
이자수입	86,072	86,072	-
지출	2,899,498	2,905,961	6,463
비용자성사업비	107,500	107,500	-
전출금	-	180,180	180,180
예치금	2,791,998	2,618,281	△173,717

주) 전출금 1억 8,018만원은 세출과목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계상된 것임.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비용자성사업비가 아니라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파주시 분담액은 총사업비의 50%로 경기도가 지급하고 남은 잔여 사업비와 일치하며, 제출된 사업별 설명자료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경기도와 평화도시 파주시의 공동주최 사업으로서, 캠프그리브스 등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국내외 방문객에게 DMZ의 평화·생태·공존의 가치를 알리고, 파주시의 평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2026년 DMZ OPEN 전시
주 최	(당초)경기도 → (변경) 경기도·파주시 공동주최
전시 기간·장소	2026. 9. 19. ~ 11. 1. / 캠프그리브스·임진각 평화누리 등
총사업비	3억 6,036만원(당초 도비 100%)
파주시 분담액	1억 8,018만원(총사업비의 50%)
지출과목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계약 당사자	경기도(2026. 5. 용역계약 체결, 6월 선금 지급)

주) 전시 기간·장소와 계약 경과는 경기도의 공동주최 의견 요청 공문(2026. 8. 10.) 및 집행부 주요사항보고에 따른 것임.

- 한편 사업별 설명자료의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재정지출 사전협의·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용역과제 사전심의가 모두 ‘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음.

【검토의견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경기도에 대한 지출의 근거

<현황>

- 제출된 변경안은 운용총칙에서 지원기준을 조례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업, 지원대상을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밝히고 있고, 사업별 설명자료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에도 경기도를 지원기관으로 기재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지출과목은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지원’이 아니라 ‘부담’의 형태임.

<검토의견>

- 조례가 정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과의 교류협력사업이며, 후단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이번 전시는 북한과의 교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 전시인바, 조례 제20조·제24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행규칙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호를 근거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지원대상(시행규칙 제3조) 요건 대조]

호	요 건	이번 사안
1	파주시 관내 주·분사무소를 둔 기관·단체	해당 없음
2	국제기구·국제비정부기구	해당 없음
3	대학 및 전문 연구소	해당 없음
4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기업	도 추진 사업에 파주시가 참여(방향이 반대)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지방자치단체를 상정한 것인지 불명확

○ 한편 이를 ‘지원’ 이 아니라 ‘부담’ 으로 보는 경우에는 지출과목의 요건이 문제 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다음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음.

- 1. 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개정) 부칙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해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 2.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
- 3.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 계약 당사자는 경기도이고 파주시는 부담금을 교부하는 데 그치는 구조인바, 위 세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지가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3호에 해당한다면 협약이 아니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한다면 ‘대등한 자치단체’로 보는 근거와 파주시가 도모하는 이익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반대로 이를 ‘지원’ 으로 보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문제 됨. 같은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보조를 각 호의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한 지출로 한정하고 있고, 경기도는 같은 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지원 절차의 이행 여부

<현황>

- 시행규칙 제5조·제6조는 기금 지원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신청(사업계획서) → 검토(목적 부합, 사업 적정여부, 규모 적정성 등)
→ 위원회 심의 → 결정·통보 → 교부(사업개시 전)

<검토의견>

- 이 사안은 경기도의 공동주최 의견 요청(2026. 8. 10.)에서 비롯된 것인바, 규칙이 정한 신청 → 검토 → 위원회 심의 → 결정·통보의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 사업은 2026년 5월 용역계약 체결과 6월 선금 지급으로 이미 개시되어 있는바, 지원금을 사업 개시 전까지 교부하도록 한 제6조와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조례 제25조제2항은 기금운용계획을 평화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번 변경안이 그 심의를 거쳤는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분담액 산정근거와 파주시의 역할

<현황>

- 총사업비 3억 6,036만원 중 경기도가 선금 1억 8,018만원을 집행하였고, 파주시의 분담액은 그 잔여액과 정확히 일치함.
- 경기도는 기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파주시는 분담금을 교부함.

<검토의견>

-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이 지출의 실질을 부담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분담 비율의 산정 근거 : 50%가 역할 분담에 따라 정하여진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확보하지 못한 잔여액이 결과적으로 50%가 된 것인지
 - 파주시의 관여 범위 : 전시 용역계약이 2026년 5월에 이미 체결되어 기획·작가·전시 구성이 확정되어 있는바, 파주시가 사업 내용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성과의 귀속 : 작품·기록물·홍보물에 대한 파주시의 권리와 공동주최 표기 방법
 - 정산 방법 :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파주시에 반환되는지